

관세연구 14 - 03

#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2014. 9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이 상 엽 세법연구센터장

### 공동연구원

김 미 영 관세사

이 민 선 관세사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	11
1. 개관	11
가. 개요	11
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 및 처리현황	15
2.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19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19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21
다. 원산지 사전심사	23
III.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28
1. 국제무역규범상 사전심사제도	28
가. 무역원활화협정상 사전심사제도	28
나. FTA와 사전심사	34
2. 미국	37
가. 개요	37
나. 사전심사의 종류	38
다. 사전심사 절차	44
라. 재심사 신청	50
3. 호주	50
가. 개요	50
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53

다.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	60
4. 일본의 사전교시(事前敎示)제도 .....	62
가. 개요 .....	62
나. 사전교시의 종류 .....	62
다. 사전교시 절차 .....	68
라. 재심사 신청 .....	73
5.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 .....	74
가. 개요 .....	74
나. 사전심사의 종류 .....	75
다. 사전심사 절차 .....	85
라. 재심사 신청 .....	90
6. 영국 .....	91
가. 개요 .....	91
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	95
다. 사전심사 절차 .....	99
7. 중국의 사전심사제도 .....	104
가. 개요 .....	104
나. 사전심사의 종류 .....	104
다. 사전심사 절차 .....	112
라. 재심사 신청 .....	11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14
1. 국제비교 .....	114
가. 개요 .....	114
나. 제도 일반 .....	115
다. 신청절차 .....	118
라. 결정 및 효력 .....	120
2. 시사점 .....	123

가. 사전심사 결정의 수입신고 .....	123
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마련 .....	124
참고문헌 .....	126
부 록 .....	128

## 표 목 차

〈표 II-1〉 관세평가분류원의 조직 및 기능.....	16
〈표 II-2〉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 담당부서 변경 연혁.....	17
〈표 II-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사전심사 대상과 담당부서.....	18
〈표 II-4〉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현황.....	19
〈표 II-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20
〈표 II-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처리절차 .....	27
〈표 III-1〉 APEC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32
〈표 III-2〉 호주 사전심사 처리 현황.....	53
〈표 III-3〉 일본 과세가격 사전교시의 주요 쟁점 .....	64
〈표 III-4〉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답변 항목.....	69
〈표 III-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69
〈표 III-6〉 이메일 신청서 작성 항목.....	71
〈표 III-7〉 EU 사전심사제도.....	103
〈표 IV-1〉 사전심사제도 국제비교.....	117
〈표 IV-2〉 사전심사 신청절차 국제비교.....	119
〈표 IV-3〉 사전심사 결정 및 효력 국제비교.....	122

## 그림 목차

[그림 Ⅲ-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사전심사 처리 건수.....	30
[그림 Ⅲ-2] 각 RTA의 무역원활화 조치 .....	36
[그림 Ⅲ-3] 사전심사 결정서신 예 .....	47
[그림 Ⅲ-4] 미국 Cross-ruling 사이트 .....	48
[그림 Ⅲ-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증가 추이.....	68



## I. 서론

-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 이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며 통관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통관지연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무역거래자와 관세당국 간 분쟁의 주요 대상은 과세요건, 즉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관련한 사안들로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매수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공식적인 통관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무역거래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이고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통관과 관련한 부패 가능성은 줄어들고 통관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에게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심사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주요국에서도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 또한 FTA 체약상대국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 부분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FTA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규 준수도 관점에서 볼 때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무역 표준을 준수하고 급격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제도의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전심사제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도의 잦은 개정에 반하여 국내 연구사례는 미흡한 편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전심사제도의 절차와 효력을 위주로 하여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각 국가들의 사전심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제Ⅱ장의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를 시작으로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한 후 제Ⅳ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국제무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주요국(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EU(영국), 중국 등 6개 국가)의 제도를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앞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Ⅱ.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

### 1. 개관

#### 가. 개요

- 우리나라는 관세액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특히 원산지 포함)를 수입 신고 전에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전 의견 교환 및 자발적 협력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사후심사 및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관세당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사후심사로 인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sup>1)</sup>
    - 납세자는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 및 불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심사행정력 절감 및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기대. 납세순응도 제고를 통해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심사의 정확도를 제고
  
- 1981년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관세법에 최초로 마련,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사전심사 규정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FTA 관련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는 2006년부터 FTA 관세특례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1)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660&layoutMenuNo=720&ntId=CONTENT\\_ID\\_00000660](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660&layoutMenuNo=720&ntId=CONTENT_ID_00000660))

- 우리나라와 발효된 9개 FTA<sup>2)</sup> 가운데 한-ASEAN FTA와 한-EFTA FTA를 제외하고는<sup>3)</sup> 모두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장에 사전심사 규정을 두고 있음
  - 9개 FTA 가운데 7개의 FTA에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6개의 FTA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3개의 FTA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함<sup>4)</sup>
    - 한-칠레 FTA 제5.9조 제1항, 한-싱가포르 FTA 제5.8조, 한-인도 CEPA 제5.8조 제1항, 한-페루 FTA 제5.7조, 한-EU FTA 제6.6조, 한-미 FTA 제7.10조 제1항<sup>5)</sup>, 한-터키 FTA 제3.8조
  
- FTA상 사전심사 대상은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위주로 하며, 한-미 FTA에는 관세환급, 감면, 원산지 표시 등을 추가하였음<sup>6)</sup>
  
- 우리나라는 심사대상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함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

---

2) 한국-칠레 FTA 2004년 4월 발효, 한국-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발효, 한국-EFTA FTA 2006년 9월 발효, 한국-ASEAN FTA 2010년 1월 발효, 한국-인도 CEPA 2010년 1월 발효, 한국-EU FTA 2011년 7월 발효, 한국-페루 FTA 2011년 8월 발효, 한국-미국 FTA 2012년 3월 발효, 한국-터키 FTA 2013년 5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는 타결된 상태

3) 한·EFTA, 한·ASEAN FTA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입자가 관세법 제232조 및 시행령 제236조의 2에서 정하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

4)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10

5)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관세 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산지국가 표시,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항

6) FTA 관세특례법 고시 제4항 내지 제6항에 관세의 환급·감면, 원산지 표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쿼터, 관세율 할당) 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는 제도로, 관세법상의 사전확인제도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여 운영

- 원산지 사전확인: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에 대해 미리 심사하고, FTA 사전심사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1990년 관세법<sup>7)</sup>에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8년부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제도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지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한 거래가격의 심사에 집중하였고, 2008년부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

- 현재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sup>8)</sup>, 동법 시행령 제10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관련 조항을 두고, 품목분류 사전

7)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8)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적용함

- 원산지과 관련해서는 사전확인제도를 통하여 관세법 제229조의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 여부,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 여부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심사하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는 FTA에 규정한 경우에만 한하여, 물품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등을 심사함
  - 관세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사전확인,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판정제도는 회신기한, 제출서류 등의 절차를 약간 달리함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로 운영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와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 근거규정을 둠
  
- 한편, 사전심사결정은 인터넷에 공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음
  -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판청구 사례뿐만 아니라 WTO 결정, WCO 권고의견, WCO 해설 및 예해 등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sup>9)</sup>
  -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분류사례와 분석회보 사례

〈개정 2013.1.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 <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376,590건, 상품 인덱스 65,830건 등 총 약 44만건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이밖에도 미국·EU·일본 등 선진 분류사례, WCO 의견서 등 외국의 품목분류 정보도 함께 제공<sup>10)</sup>

- FTA 체결의 확대와 함께 외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 사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세청에서는 ‘세계 HS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련정보 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HS 국제분쟁의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음<sup>11)</sup>

## 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 및 처리현황

□ 사전심사 업무는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임<sup>12)</sup>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원산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확인은 관세청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에서 과세가격 사전심사(특수관계<sup>13)</sup>)와 일반으로 구분 및 질의회신을 담당하고, 품목분류과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협의회 운영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관련업무 및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 FTA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sup>14)</sup>

-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2004년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인계되는 등 여러 번의 이관 이후 2009년부터 일원화.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마약류, 건강유해식품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업무에 집중<sup>15)</sup>

10)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143

11)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12)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 2009년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인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 2인과 관세평가분류원 ACVA팀은 5인으로, 기업규모, 업종, 업무 분담정도를 고려하여 구성됨. 제도 개정, 법령 개선 담당 1인, 신청서 접수, 사전 상담, 가산요소, 공제요소 및 과세가격결정방법 검토자 2인, 제출서류 검토자 2인(기업심사 전문가와 회계사로 구성): APEC,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2009. 12, pp. 71~72, p. 118

1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449&layoutMenuNo=20116](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449&layoutMenuNo=20116))

15) 2007년 FTA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를 위임, 2009년 AEO 공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2년 이와 관련한 수출입안전심사과를 증설

○ 한-미 FTA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는 관세청 일부 부서에서도 업무를 담당함

〈표 II-1〉 관세평가분류원의 조직 및 기능

구분	기능	인원 (2012년 기준)
관세평가과	· 관세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 · 관세 과세가격 관련된 전삼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 ·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 등	11인
품목분류 1과	·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 · 수출입물품(제82류, 83류, 85류~97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11인
품목분류 2과	· 수출입물품(제1류~제81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12인
정보분석과	·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5인
수출입안전심사1과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 및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 ·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 기법의 개발	14인
수출입안전심사2과		11인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33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최초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로 운영하다가 품목분류 관련 민원제도의 세관(확인서 발급)과 관세평가분류원(사전심사)의 이원체계를 2011년 5월부터 분류원으로 일원화하였고, 2012년 3월부터는 확인서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심사제도로 통합하여 운영중임

○ 품목분류 민원회신제도는 수출입 통관실적 유무에 따라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2012년 3월부터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민원회신 제도인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일원화<sup>16)</sup>

○ 1992년 관세청에서 중앙관세분석소에 제1류부터 81류까지의 품목분류 업무를 위

입하고, 분류원이 신설된 이래 2004년 분류원으로 일원화하였다가 2009년 분류원에서 제1류부터 97류까지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II-2〉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 담당부서 변경 연혁

1981년	1983년	1988년	1992년
사전회시 제도 도입	분석소 일부 위임	본청 일괄 처리	분석소 위임(1~81류)
1903년	2004년	2006년	2009년
분류원 신설(82~97류)	분류원 일원화(1~97류)	분석소 위임(1~81류) 분류원 위임(82~97류)	분류원 일원화(1~97류)

자료: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 관세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FTA상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재심사 처리,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업무를 담당하되, 일부 특혜원산지 외의 사전심사는 관세청에서 주관함
  - 「FTA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 4호 내지 6호의 해당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함<sup>17)</sup>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불복청구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평가와 관련된 민원신청을 보면 일선 세관의 질의 건수가 늘었으나, ACVA 신청 건수는 2008년 이래로 연 10건을 하회하는 등 대부분 민원질의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18)</sup>
  - ACVA는 2008년 4건, 2010년과 2011년에는 5건, 2012년 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2012년까지 총 9건
  -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원산지 사전심사의 업무처리 현황은 미미한 수준임

16)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관세법 제86조제1항)과 관련한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신청인의 최초 수출입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17) FTA관세특례법 제28조의 4

18)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34

〈표 II-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사전심사 대상과 담당부서

FTA 계약상대국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미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각 담당부서

자료: 관세청 FTA포탈 재인용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materials\\_info/DBAQ602.html&mc=FTA2010\\_IMPORT\\_INFO\\_INSPECTION](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materials_info/DBAQ602.html&mc=FTA2010_IMPORT_INFO_INSPECTION))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2012년 FTA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sup>19)</sup>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한-EU FTA 발효, 2012년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출입품목번호 확인 급증에 따라 사전심사 건수가 증가함<sup>20)</sup>
  -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처리 기간이 2012년 29.6일로 조사되어 2010년 대비 3.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일평균 처리건수가 2010년에는 0.5건인 데 비해 2012년에는 1.14건으로 약 228% 증가<sup>21)</sup>
    - 품목분류 실무인력은 2009년 11인, 2010년 14인, 2011년 15인에서 2012년 21인으로 증원되었음<sup>22)</sup>

19)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20)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29

21)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22)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표 II-4〉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 건수	1,611	1,554	1,419	2,428	5,063
민원처리 기간	13.9	19.8	20.4	26.2	29.6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142, 235

## 2.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인은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 계약서,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공제요소 및 실제 지급금액 여부에 대한 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청인과 납세의무자, 거래관계가 동일하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은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 심사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표 II-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구분	일반 사전심사
심사대상	일반 수입물품
근거법령	관세법 제37조
시행시기	'90.12.3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심사절차	일방 결정
소관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 여부 확인)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심사기간	30일
적용요건 및 유효기간	납세신고서가, -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 제출내용에 거짓이 없고 가격신고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을 것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사후관리	보고의무 없음

자료: 관세청 일부 재구성

-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 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우편발송, 인터넷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함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시험, 분석한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sup>23)</sup>로 하나, 2013년 소위 “Fast Track”이라는 조기심사요청제도가 도입<sup>24)</sup>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조기심사요청 사유로는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우,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함
-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23) 2005년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다가, 2012년 부실심사 우려로 인하여 30일로 연장

24)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2013년 6월 관세청고시 제2013-59호, 신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함<sup>25)</sup>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sup>26)</sup>
  -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품목분류 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사전심사서에 기재하여 통지함

□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함

□ 한편, 관세청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신청인에게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sup>27)</sup>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됨
- 원칙적으로 품목분류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미 선적된 물품 등 예외적으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5) 2014년 8월 7일 관세법 입법예고의 내용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에 대한 고시·공표 제도를 폐지를 포함시켜, 향후 이는 폐지될 예정

26)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27)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sup>28)</sup>

## 다. 원산지 사전심사

### 1) 관세법상 원산지 사전확인

- 관세법상 사전확인제도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
-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의 특혜관세를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원산지 결정기준별 입증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
  -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및 기타 카탈로그 등 참고서류
- 세관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

28)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함

-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음

□ 사전확인 결과의 통지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보정이 필요한 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2)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 규정을 둔 FTA에 한하여 수입신고 전에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대리인 포함)가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표시 이외에도 FTA에서 달리 정한 경우 과세가격,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 물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 물품의 부가가치 산정·관세의 환급·감면·원산지 표시 및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등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기초가 되는 사항<sup>29)</sup>

□ 신청인은 사전심사신청서와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요구에

29) FTA관세특례법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①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함

□ 결과회신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심사결과는 사전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sup>30)</sup>에 공표되어야 함

○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에 규정된 공표의무를 FTA 관세특례법 고시 제 54조에 반영하여 2013년 9월부터 시행

□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sup>31)</sup>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함

○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전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사전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음

□ 한편, 협정 또는 법령의 개정 등 사전심사서 내용이 일정 사유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수정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및 품목분류, 부

30)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31)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 한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서에 따라 적용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입증하고 각각 60일과 90일 내의 범위에서 적용유예가 가능
-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32)</sup>
-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 한하여는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sup>33)</sup>
  -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32) FTA관세특례법 제22조 ② 6호

33) FTA관세특례법 제17조의 3, 시행령 제26조의 2

〈표 II-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 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 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예: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 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 청 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자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 지침」, 2012. 3, p. 5

###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 1. 국제무역규범상 사전심사제도

##### 가. 무역원활화협정상 사전심사제도

- 국제규범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일반적으로 수출입 전에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음<sup>34)</sup>
  - WCO 개정교토협약 표준 9.9에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ruling) 또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관세당국이 현행 법령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주요 혜택은 당해 결정의 적용에 관한 법적인 보장으로 언급
  - 국가마다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달리하고 있지만, 사전심사의 일반적인 정의는 공통으로 적용됨
  - WTO 원산지협약의 서문에도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촉진에 기여함을 언급하고 있음<sup>35)</sup>

34)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rul.aspx>

35)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WTO 원산지협약에서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원산지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규정. WTO 원산지협약 부속서 제2장 제3조 (d) (Common Declaration with regard 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pon request of an expor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assessments of the preferential origin they would accord to a good are issued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50 days(7) after a request for such an assessment provided that all necessary elements have been submitted. Requests for such assessments shall be accepted before trade in the good concerned begins and may be accepted at any later point in time. Such assessments sha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provided that the fact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which they have been made remain comparable. Provided that the parties concerned are informed in advance, such assessments will no longer be valid when a decision contrary to the assessment is made in a review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f). Such assessments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g);

- 사전심사(advance ruling)제도는 통관절차의 신속, 표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sup>36)</sup>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됨
  - 이 제도를 통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통관 전에 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출입 물류기업들이 보다 확실하고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국가로 이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역진흥에 영향을 끼치게 됨<sup>37)</sup>
  - 무역법규를 신속하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GATT 제10조(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를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전심사제도를 제시<sup>38)</sup>
    - 2013년 WTO 국제무역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동화, 비용 및 수수료의 절감 등을 포함한 요소 가운데 특히 사전심사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무역원활화 이행수단이라고 분석<sup>39)</sup>
  
- 이와 관련하여 2011년 OECD에서는 전체 무역비용의 10%를 절감시키는 11대 무역원활화 요인을 선정하고 국가별 무역원활화 관련 운영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sup>40)</sup>를 발표하였음
  - 사전심사(Advance Ruling), 불복절차(Appeal Procedures), 외부 협력(Co-operation - External), 내부 협력(Co-operation - Internal), 수수료 및 부과금(Fees and Charges), 자동화 절차(Formalities - Automation), 문서 절차(Formalities - Documents), 행

36)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란 무역의 법규적 통제를 보장하면서 적법한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APEC에서 제시하는 무역원활화는 투명성 및 행정협력, 간소화 및 효율성, 비차별·일관성·예측가능성 및 합리적인 절차, 현대화 및 신기술 이용 등을 원칙으로 함

37) 품목분류, 원산지 등의 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관세당국과 무역거래자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며 비공식적인 수단의 남용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나아가 전체 무역거래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38) WTO 체제하에 GATT 제V조 (Freedom of Transit), 제VIII조(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및 제X조에 무역원활화조치를 규정

39)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pp. 10~11.

40) Evdokia Moi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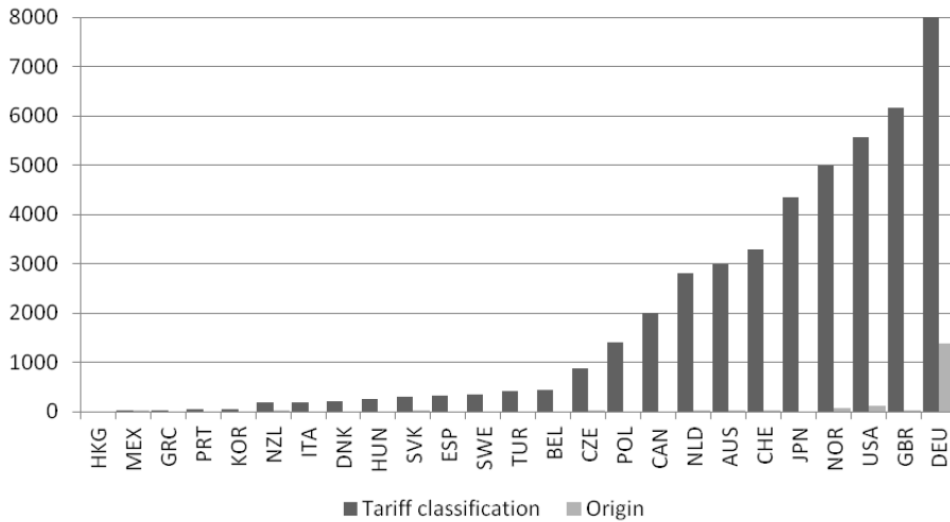
정 절차(Formalities - Procedures), 관리와 형평성(Governance and Impartiality), 정보 접근성(Information Availability), 이해관계자의 참여(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sup>41)</sup>

- 이 보고서에서는 무역규모와 사전심사 실적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처리기간 등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심사 연간 처리실적을 조사한 바, 무역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부 소규모 무역국가인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와 네덜란드도 비교적 높은 편임<sup>42)</sup>

[그림 Ⅲ-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사전심사 처리 건수

(단위: 건)

Figure 5. Total number of advance rulings (per year)



자료: Evdokia Moi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p. 17

41) OECD, <http://www.oecd.org/trade/facilitation/indicators.htm#OECD-members-TFI>

42) 신청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국의 관세율 구조(structure of the tariff schedule)을 포함하여 관세율 수준,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 건수의 비율 및 수입자 규모로 나타났고, 공표, 사전심사 처리의 속도 및 신빙성, 유효기간 등의 행정적 절차 및 정책적인 요소를 추가

- 이렇듯 국제무역사회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sup>43)</sup>에 포함시키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도적 이행절차를 논의해 왔음<sup>44)</sup>
  - UNCTAD는 이행방안으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법제화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된 관세 행정기관에 속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부서의 설립과 정보기술의 지원을 통한 업무를 권고함<sup>45)</sup>
  - APEC에서는 2011년 두 단계의 무역원활화이행계획을 통해 물류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권고
  
- 무역원활화협정의 제3항인 사전심사(advance rulings)에 대해서 회원국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의무화되었으나 관세평가, 관세면제, 쿼터 등의 여타 범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합의하였음
  -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공’과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부여’, ‘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등의 조항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계획에 대해 2014년 5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상태임
  - 협정문 내 제도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sup>46)</sup>

43)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처음 제기된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합의로, 2006년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재개되어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 2015년 7월까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를 채택하면 발효 예정. 우리나라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44) WCO,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6, pp. 21~24.

45)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46) 오현길, 「아시아경제」, 정부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협정 즉시 이행,” 2014. 5. 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909011106352>

- 특히 2010년 APEC에서는 각국의 행정적 이행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공표하도록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sup>47)</sup>
- 각 국가에서는 사전심사의 유효성(validity)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legal framework)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표 Ⅲ-1〉 APEC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목적 및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 원산지, 및/또는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이행을 위한 목적</li> <li>- 쿼터, 환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li> </ul>
회신기한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된 때에 일정 기한 내에 결정을 회신하여야 함</li> <li>-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결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li> </ul>
유효기간 및 적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정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발급 이후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함</li> <li>- 동일 신청인의 향후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결정 당시의 상황과 거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적용 가능</li> </ul>
심사내용의 변경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당해 결정의 사실관계와 사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아야 함</li> </ul>
공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한 관보, 인터넷 또는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함</li> <li>- 회신기한</li> <li>- 유효 기간</li> <li>- 제출서류, 양식 등 신청요건</li> </ul>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 당국은 원 결정의 심리(administrative review) 또는 원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함</li> <li>- 결정 당국은 사전심사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한 소송(judicial appeal)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li> </ul>
기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무역거래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전심사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인터넷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기밀정보 유지와 자료보관의 의무가 있음</li> </ul>

자료: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47)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1, WTO 무역원활화 협상그룹(WTO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

- 관련 법령에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사전 심사 취소 사유(법령의 변경 또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사전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 또는 행정적인 권리 구제절차 및 신청 기한, 신청 방법, 관세당국의 회신 기한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 사전심사의 효력에 대해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사전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표(publication)<sup>48)</sup>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속력을 보장하도록 함
- 또한 GATT 제10조에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공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전심사결정은 공표대상 가운데 행정청의 결정에 속함
- WTO 관세평가협정 제12조에 따라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법원의 판결(judicial decision) 및 행정청의 결정(administrative ruling)은 GATT 제10조에 따라 당해 수입국에서 공표되어야 함.<sup>49)</sup> GATT 원산지에 관한 협약에서 원산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표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 GATT 제10조의 범위는 법률(laws), 법령(regulations), 법원의 판결(judicial decisions) 및 행정청의 결정(administrative rulings)으로 함<sup>50)</sup>
  - 대개 행정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광범위하게 공표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장소나 내부적 회람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함<sup>51)</sup>

48) 공표(Publication)는 정보를 제3자나 일반인에게 보여주거나 배포, 유통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말함

4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rticle 12: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giving effec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ublish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X of GATT 1994 by the country of importation concerned.

50) 법률은 의회 또는 입법기관에 의해 공포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행 규칙을 말하며, 법령은 하위법규로서 행정청에 의해 채택되는 것. 법원의 판결 및 행정청의 결정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정부기관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말함

51)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Publication of trade related information(TN/TF/01)," 2011. 2.

- 법률은 모든 국가에서 헌법상의 일법절차로서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포하지만, 규정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공포관행이나 의무를 달리하고 있음<sup>52)</sup>
- 사전심사의 신청방법과 유효기간 등 제반 절차뿐만 아니라 효력의 범위 등이 공포됨으로써, 무역거래자들은 무역법령, 수수료 및 관세율 및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음

## 나. FTA와 사전심사

- WTO 무역원활화협정 논의가 시작된 2004년 이후로 체결된 RTA에는 WTO에서 논의되던 무역원활화 조치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을 채택하기 시작함<sup>53)</sup>
  - WTO-like 조치는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간소화 및 조화(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협력(collaboration)의 3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심사제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류
- 따라서 RTA의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은 WCO의 정책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각국에 위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RTA에서는 GATT 및 WTO 원산지협정을 재확인하는 형식의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을 삽입
  - RTA와 WTO의 규정상 차이는 크게 사전심사 대상의 범위, 사전심사 결정의 회신 기한 및 사전심사결정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음<sup>54)</sup>
    - 예를 들면, 미국-칠레 FTA와 미국-콜롬비아 RTA에서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52) 결정 및 판결은 법령과는 달리, 대개 특정 사건이나 정황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나, 행정청의 일부 결정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음. 일부 WTO 패널과 상소기구(the appellate body)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범위를 다룬 바 있음

53)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p. 6.

54)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p. 10. 2011년 5월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을 구분하여 총 202개 RTA 가운데 118개(58%)를 대상으로 조사.

방법, 관세환급, 원산지, 재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규정. 반면, TPP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사전심사는 배제. 태국-호주 FTA와 태국-뉴질랜드 RTA에는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만을 규정

- 태국-호주 FTA와 태국-뉴질랜드 RTA에서는 회신기한을 30일로 규정, TPP에서는 60일로, 미국-호주 FTA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에서는 120일로 규정,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RTA에는 150일로 규정
-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태국-뉴질랜드, ASEAN-호주-뉴질랜드 FTA, 미국-칠레 FTA에서는 3년으로, 태국-호주 FTA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국이 체결한 일부 FTA에는 효력에 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 2008년 이후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또는 관세행정협력(Customs Administration) 장(Chapter)을 두어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을 보다 활발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관세행정 협력에 관한 조항이 두드러짐<sup>55)</sup>

○ WTO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보고서와 RTA의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무역원활화 조치로 크게 7개 부문, 43개 조항을 추려볼 수 있음

-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정(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물품의 통관 및 반출(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국경 당국 협력(Border agency cooperation), 형식 및 서류요건(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환적 및 일시 반입(Transit and temporary admission), 관세행정협력(Customs cooperation)

□ 특히, 최근 10년간 발효된 R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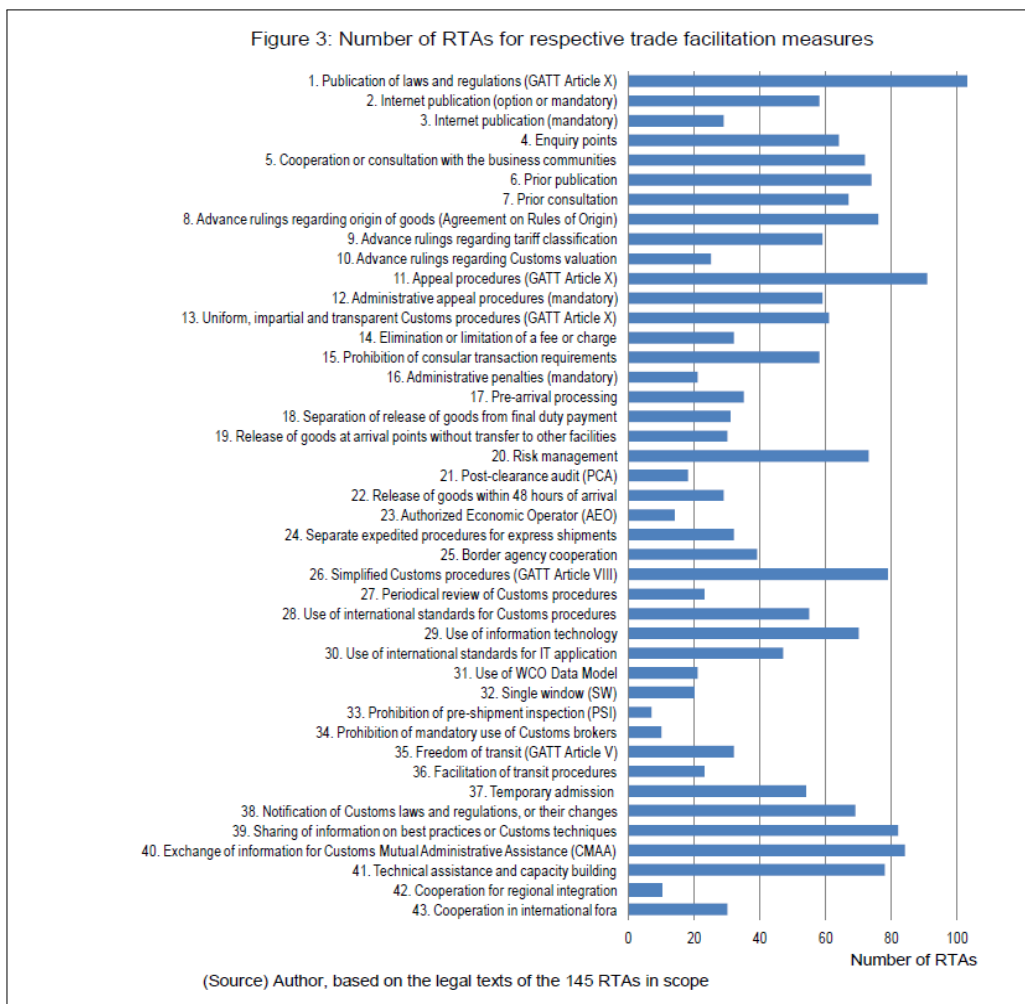
○ 2013년 말까지 발효된 총 247개의 RTA 가운데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슈화된 2003

55)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4, 6-7.

56)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4, 6-7.

년과 2013년 사이에 발효된 145개의 RTA(116개 계약국)를 대상으로 분석<sup>57)</sup>. 이 가운데 126개의 RTA가 무역원활화 관련 조문을 두고 있음

[그림 Ⅲ-2] 각 RTA의 무역원활화 조치



자료: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8

57) the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2014년 6월 기준으로 260개의 RTA가 발효된 상태.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10년간 활발히 RTA 체결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계약당사자(칠레, EFTA 4개국, EU, 싱가포르, 터키, 일본, 파나마, 페루,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 중국)가 체결한 RTA가 조사대상 145개 RTA 중 120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기술

- 원산지 사전심사는 약 80여개의 FTA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약 60여개의 RTA에서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 있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20여개의 일부 RTA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116개 조사대상 체약국 가운데 절반 이상의 체약국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3분의 1 이하의 체약국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둠

## 2. 미국

### 가. 개요

- 미국의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칭 CBP)은 1989년부터 미국으로 수출입될 물건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정보나 CBP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미 관세법 시행령 제177장<sup>58)</sup>에서 CBP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의 법적 근거가 마련
  - 사전심사서 내용은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 구속함
- 수입자, 수출자, 제조업자 등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세관의 관할업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관세평가, 환급, 수입절차, 운송수단, 지적재산권(IPR) 등에 대한 사항은 본청 소속 법규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워싱턴 D.C. 소재)에서 담당
  -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표기, FTA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상품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 소재)<sup>59)</sup>에서 담당

58) Part 177(administrative Rulings) of Title 19(Customs Duties) of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9) NCSD는 기계제품, 특수상품, 식품화학제품, 유리·금속제품, 의류제품, 섬유·플라스틱과 등 6개 과로 구성

- 심사결정 내용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에 등록·공표됨
  - CROSS 사이트는 무료로 접속 가능
  - 유사 품목에 대한 심사 결정문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음
  - 2013년 기준 169,000개 이상의 결정내용이 게재되어 있음

## 나. 사전심사의 종류

### 1) 과세가격 사전심사(Valuation Rulings)

-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세평가 적용의 일반원칙에 대한 심사로, 본청 소속 OR&R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적용가능한 모든 거래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 처리 요청이 가능함
  - 모든 거래 당사자 및 그들의 주소, 수입자와의 관계 명시
  - 모든 거래에 대한 관련 정보, 기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 인코텀즈 조건 및 기타 거래조건의 상세 내역
  - 로열티와 수수료의 경우 실제 계약서 등 쟁점사항별로 요구되는 자료
  - 기존 심사내용, 판례 등의 참고사항 인용
-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서를 발급하며 심사결정 내용과 동일한 물품,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물품의 수입 시 해당 과세가격이 적용됨

### 2)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Classification Rulings)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의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규정 적용에 대

---

NCSD에서 근무하는 국가상품전문가(NIS)는 각 부문별 품목분류 전문가로서 약 100여명이 근무

한 것으로, HTS 번호는 물품의 적용가능한 관세율 및 다양한 무역제도의 적용가능 여부를 결정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뉴욕에 소재한 NCSD에 신청하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됨
  - 그러나 재심사 신청, 결정의 변경 등 NCSD의 품목분류 심사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본청 소속 OR&R이 담당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내역이 요구됨
  - 구성 원재료(무게 및 수량, 가치), 수입 후의 용도, 기능, 카달로그·그림·사진, 공정도, 화학적 구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기타 품목분류 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은 개별 건당 동일한 종류의 5개 물품에 한정됨
  
- 심사 신청시 제출된 샘플과 동일하거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물품의 내역과 동일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해당 결정내용이 반영됨
  -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결정서 수취 사실을 명시하여 심사 결정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법적 효력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CBP에서 당해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세관의 수입신고 시 적용됨
  - 세관 직원은 사전심사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입자는 사전심사로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sup>60)</sup>

60) 19CFR 제177.9조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 3) 원산지 사전심사(Country-of-Origin Rulings)

- 원산지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당국이 확인하고 이를 3년간 보장하는 제도임
  - 원산지 사전판정은 특혜세율 및 기타 다른 무역제도의 적용가능 여부를 결정
  - 법원의 판례 이외에도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함
  
- 원산지 사전심사는 계약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미국의 수입자를 비롯하여 미국 내 생산자 및 도매업자, 이와 관련된 업종의 노동조합, 무역협회, 유사물품의 도매업자도 신청 가능
  - 또한, 이들의 권한 있는 법적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나 이들 대리인의 서명 필수
  
- 원산지 사전심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구됨
  - 신청인의 정보, 사전심사 대상 물품명세, 각 구성 원재료의 원산지, 공정이 수행된 국가, 원산지 규정에 따른 상세 생산정보, 적용 협정 및 무역제도<sup>61)</sup>, 각 생산국가별로 발생한 제조원가 정보 등
  
- 사전심사를 통해 당해 송장 물품 이외 다른 송장의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보장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전판정 당시 원산지 결정에 사용된 물품과 상황이 동일해야 함
  
- 원산지 사전심사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관세청의 인터넷 사이트(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에 일부 공표된 사례가 있음<sup>62)</sup>

61)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나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와 같은 특별무역제도가 있음

62) 한 예로 중국이나 한국산 직물을 재단해 만든 원단을 미얀마에서 단추, 실 혹은 칼라스테이(collar stay), 일본산 스냅(snap) 등을 사용해 셔츠로 완성한 경우 이를 미얀마산으로 표시(label)할 수

- CBP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관련 분쟁은 품목분류보다 많지 않으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원산지 분쟁 사례는 원산지 결정 규범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음<sup>63)</sup>
- 201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관련 원산지 사전심사는 총 4건이며, 그 중 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사전심사는 총 2건임<sup>64)</sup>

#### 4)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 원산지표시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적절히 표시되거나 라벨링되었는지 결정하는 제도임
-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됨
  - 제품 및 포장에 표기된 상세 내역, 물품이 라벨링 및 포장된 이미지, 원산지표기 및 기타 라벨링 및 포장된 내역에 대한 이미지, 수입후의 구체적인 용도

#### 5)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

-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나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기회법)<sup>65)</sup>와 같은 특별무역제도가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

있다는 결정이 있었음(HQ 952750 of October 16, 1992)

63)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정보』, 2013. 5.

64) 2012년 12월 화학제품(HS3907.20)의 특혜적용가능 여부(충족), 2013년 4월 텅스텐가루(HS 8101.10)의 특혜적용 가능 여부(충족), (관세청 FTA포털,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65)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對아프리카 정책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네 차례 연장됨. 이 법에 따라 AGOA 수혜 국가는 미국 수출 시 무관세·무쿼터(DFQF)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수혜국은 34개국이었으며 2013년 40개국으로 확대. 주요 수혜국은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음(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정보, 경제동향)

-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요구되는 상세 제품정보와 함께 생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가) NAFTA<sup>66)</sup>

- 수입자,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자와 생산자는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NAFTA 협정의 적용에 대해 미국 세관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협정문 제509조의 사전심사 규정에 따라 19 CFR 181장 Subpart I에서 NAFTA 사전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NAFTA 사전심사는 19 CFR 181.93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미국은 NAFTA에 따라 다음의 사안에 대해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NAFTA 체결대상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가 NAFTA 지역에서 생산결과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품 및 원재료의 거래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재 및 순원가에 관련된 비용의 계산 기준 및 방법
  - 제품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 제품이 수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NAFTA 이외의 국가로 수출 후 재수입시 NAFTA의 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협정문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적절한지 여부
  - 섬유제품, 관세철폐, SPS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up>67)</sup>에 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66) CBP, NAFTA advance Ruling Procedure(<http://www.cbp.gov/trade/nafta/advance-rulings>)

67)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 사전심사 신청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NAFTA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함
  - 거래관련 사항은 모든 거래당사자의 정보, 수입예정 항구명이나 해당 거래의 관할 지역, 거래 상세내역, 심사요청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포함
  
- NAFTA 사전심사는 OR&R이나 NCSD로 모두 신청 가능
  - 역내 부가가치기준과 관련된 문의로는 OR&R에 신청
  
- NAFTA 사전심사 결정서는 관세당국을 구속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일이나 결정서에 별도 표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효력 발생일 이후의 수입건에 적용됨
  -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사전심사 신청인이 결정서상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적용될 수 없음
  
- 심사 신청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정 및 취소가 심사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하에서만 소급되어 재심사가 이루어짐
  
- 사전심사 결정서를 수취한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6) 운송수단 사전심사(Carrier Rulings)<sup>68)</sup>

- 운송수단에 대한 사전심사는 항해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임
  
- 심사 신청시 운송수단이 선박인 경우 선박이 건조되고 등록된 국가 및 장소, 미국의 관할구역 내에서 운항한 적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만약 사전심사 신청된 항해의 기본 목적이 연안 운송수단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서에 출발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이 나타난 여행일정표 및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68) 19 CFR 177 Subpart A-General Ruling Procedure

연안항구의 항해 조정표를 첨부해야 함

- 가능하다면 브로셔, 광고물, 기타 예정된 항해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 사전심사 절차<sup>69)</sup>

### 1) 사전심사 신청

- 심사 신청은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 건 관련자 및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온라인<sup>70)</sup>으로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 가) 서면심사 신청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거래 관련 모든 사실을 기재한 서면(letter)을 우편을 통해 관련 사항에 따라 OR&R 또는 NCSD로 보내면 됨
  -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예정 항구명, 심사 신청 종류, 거래내용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 그러나, 과세가격 및 운송수단에 대한 사전심사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OR&R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됨

69) 관세청,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2013.10.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정보』, 2013.5.

70) 2005년 12월부터 전자사전심사(e-Ruling)를 실시

나) 전자심사(e-Ruling) 신청

-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sup>71)</sup>를 통해 사전심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CBP에서 이메일을 통해 접수확인을 통지, 30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 통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뉴욕의 NCSD에서 처리하며, 비공개 심사건은 처리하지 않음
  
- 인적사항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기재한 온라인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인적사항 등
    -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는 대상에 체크하고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레터의 제목 등을 간략하게 기재
  - 거래와 관계된 사실내용
    - 유사 물품과 관련하여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것이 있거나 판례가 있는 경우 그 내역도 함께 첨부
    -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진, 기능, 용도, 구성, 성분 등의 정보를 면밀히 기재
  - 서술한 내용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업로드 한 후 ‘제출(Submit)’을 눌러 제출
    -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최대 5개이며 전체 3.7MB까지 올릴 수 있음

2) 심사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NCSD에서 30일 내에 심사 결정되어 신청자의 e-메일로 통보되며, 본청 OR&R으로 신청한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되어 우편으로 발송
  - 실험보고서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 특정 사안에 대해 빠른 심사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빠른 심사 신청도 가능
  
- 제출된 신청서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를

71) <http://apps.cbp.gov/erulings/index.asp>

받은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보완을 위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서에 요청정보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 배제된 신청 건은 철회한 건으로 간주됨

□ 심사 중 사전심사 신청관련 거래상황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세관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 발급 전 언제라도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의 철회 요청 가능

- 철회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는 회수 불가능
- 본청은 해당 심사에 대한 견해와 관련 자료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신청인의 관할 구역 세관에 제공할 수 있음

### 3) 심사 결정 및 효력

□ 결정은 결정서신(Ruling Letter)으로 통보되며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심사결정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레터 형식으로 심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근거한 ‘사실관계(facts)’, 심사 신청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issue)’, 검토된 법률 및 이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법률검토·분석(law and analysis)’ 및 최종 결론에 대한 ‘결정사항(hold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Ⅲ-3] 사전심사 결정서신 예

N205394  
 March 22, 2012  
 CLA-2-38:OT:RR:NC:2:239  
 CATEGORY: Classification  
 TARIFF NO.: 3824.90.9290  
 Mr. Glenn M. Carberry Praxair, Inc.  
 175 East Park Drive Tonawanda, NY 1415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ompressed gas mixture from South Korea

Dear Mr. Carberry:

In your letter dated February 21, 2012, you requested a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The subject product is a compressed gas mixture of fluorine and nitrogen. You state that the product will be imported in a cylinder and will be used to passivate steel and stainless steel piping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applicable subheading will be 3824.90.929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including those consisting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Other: Other: Other: Other. The rate of duty will be 5 percent ad valorem.

Duty rates are provided for your convenience and are subject to change. The text of the most recent HTSUS and the accompanying duty rates are provided on World Wide Web at <http://www.usitc.gov/tata/hts/>.

This ruling is being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177 of the Customs Regulations (19 C.F.R. 177).

A copy of the ruling or the control number indicate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the entry documents filed at the time this merchandise is imported.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ruling, contact National Import Specialist Richard Dunkel at (646) 733-3032.

Sincerely,  
 Thomas J. Russo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자료: CROSS 사이트

- 이러한 사전결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세관의 법 해석 및 적용의견으로 모든 세관원을 구속함
  - 사전결정은 수입 항구에서 효력을 가지며 수입자에게 일정한 안전성을 부여함
  - 그러나, 신청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수입된 물품이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를 경우 세관당국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해 심사 결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CBP는 수입 신고 후 사전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실제 거래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음
  
- 사전결정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CBP에서 결정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함
  - 사전 결정은 일반적으로 결정 당일부터 유효함
    - 이전에 수입통관하였더라도 아직 정산(liquidation)을 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유효함
  
- 다음의 경우 심사결정을 배제하여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음

- 신청서에 요청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입항구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 요청내용이 가설인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 거래가 종료된 경우
- 사전심사결정은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에 공지되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조회 가능
- 사전심사신청인은 신청서에서 재무정보,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청서에 비밀정보를 명확히 명시하고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예외가 되는 비밀유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그림 III-4] 미국 Cross-ruling 사이트

Date	Rank	Ruling Category Tariff No.	Ruling Reference	Related
1/19/2007	97.9%	<a href="#">HQ 598453</a> Classification	Use of certain yarn in the assembly of garments otherwis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CAFTA-DR	References <a href="#">HQ4722</a>
1/15/2009	20.2%	<a href="#">NY N047891</a> Classification <a href="#">8202.11.00.10</a> <a href="#">9822.05.01</a>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2/13/2009	20.2%	<a href="#">NY N041965</a> Classification <a href="#">8202.11.00.10</a> <a href="#">9822.05.01</a>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References <a href="#">HQ47891</a>
2/24/2009	20.2%	<a href="#">NY N052509</a> Classification <a href="#">8202.11.00.10</a> <a href="#">9822.05.01</a>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References <a href="#">HQ51885</a>
8/7/2009	15.2%	<a href="#">NY N058485</a> Classification <a href="#">8204.63.35.10</a> <a href="#">9822.05.01</a>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pants from Dominican Republic.	
1/11/2006	7.6%	<a href="#">HQ 563351</a>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f Protest 0401-05-100117; bracelets; CBTPA; DR-CAFTA; 9802.00.80	

자료: <http://rulings.cbp.gov>

#### 4)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세관은 오류가 있는 등 법 해석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결정도 마찬가지로  
  - 아울러 요청자의 재고(Reconsideration) 요청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사전결정의 취소나 변경은 요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취소나 변경일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sup>72)</sup>
  
- 기존 결정이 잘못되어 CBP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수에 따라 절차는 달라짐
  
- 60일 미만의 사전결정의 경우 기존 결정서신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새로운 결정서신을 발행  
  - 취소나 수정의 서신 발행일로부터 효력 발생
  
- 6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사전결정은 주간 Customs Bulletin(게시판)에 취소 또는 수정된 결정내용을 기존 결정과 함께 공지하고 30일간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sup>73)</sup>  
  - 30일 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최종 결정서신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Customs Bulletin(게시판)에 공지
  - 이렇게 수정되거나 취소된 내용의 결정서신은 게시판에 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됨
  - 그러나, 물품이 이미 운송 중에 있는 경우 기존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됨

---

72) KOTRA 국가정보, 미국, 관세제도

73) 19 USC 1625

## 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 서신을 받은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74)</sup>
  - 결정서신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청 OR&R에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서에는 법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결정내용의 잘못된 근거를 명시해야 함
  - 동일 물품, 동일 거래 또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전의 심사결정의 인용 가능

## 3. 호주

### 가. 개요

- 사전심사(Advance Rulings)는 수출입되기 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속력 있는 행정청의 의견(advice)을 통지함으로써, 수출입자와 행정청 양측에 통관행정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무역원활화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수출입자는 실제 수출입 거래 이전 및 이후 유사한 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이로써 통관절차는 신속해지고 해당 물품의 통관 지연이 감소될 수 있음
- 호주는 1971년부터 품목분류(Tariff Advice), 1990년부터 관세평가(Valuation Advice)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왔으며, FTA 규정상<sup>75)</sup> 필요에 따라 2005년부

74) 19 USC 1625(b)

75) 호주-미국 FTA(2005년 1월 발효): 관세행정예 관한 장(Chapter) 제6.3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및 제6.4조 권리구제(appeal and review), 호주-태국 FTA(2005년 발효): 제3장 관세행정(Customs Procedures) 제307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칠레 FTA(2009년 발효): 제5장 관세행정(Customs Procedures) 제5.10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당사국과 순차적으로 발효): 제4장 관세행정(Customs Procedures) 제8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말레이시아 FTA(2013년 발효): 제4장 관세행정협력(Customs Procedures and cooperation) 제 4.6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협정(Australia-New Zealand

터 특혜원산지-Origin Advices)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감면(Tariff Concession Order) 적격성을 판단함. 수입통관 중에 실시간으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수입통관이 예정된 새로운 물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제도임
- 관세평가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심사
- 원산지 사전심사는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안<sup>76)</sup>을 심사

- 호주의 사전심사제도는 호주 관세법(the Customs Act 1901)에 의한 공식적인 결정(formal decision)이 아니며, 수입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청의 과세의견을 전달하는 안내(advice)라고 보아야 함

-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

- 즉, 동 제도는 호주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어떻게 특정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규칙(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따라 행정청의 이행지침(practice statement) 또는 가이드라인(instruction and guideline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01, Valuation Advice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No. 2008/039291

- 품목분류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26, Tariff Advices

- FTA 원산지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13,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당해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당해 행정청은 기속함

---

Closer Economic Relations)(1983년 발효), 호주-싱가포르 FTA(2003년 발효): 관련 규정 없음

76) 호주-미국 FTA 제6.3조에는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 관련 과세가격 문제, 원산지, 특혜원산지 등 사전심사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이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ACBPS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행정청을 기속
- 관세평가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같은 부서에서 주관하고 품목분류 소관부서는 따로 두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Director Valuation and Origin Section (관세평가 및 원산지국) Trade Policy and Implementation Branch(무역정책 이행과)
    - 이전가격 사전심사(transfer pricing valuation advice)는 별도의 화물정책과 무역원활화협정부<sup>77)</sup>에서 주관하며,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영향을 받았는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the National Director, Trade and Compliance(무역규제)
  - FTA 원산지 사전심사는 Director Valuation and Origin Section (관세평가 및 원산지국) Trade Services Branch(무역 서비스과)
  - 2010년과 2011년에는 사전심사 담당 인력으로 관세평가 및 원산지 사전심사 5인과 품목분류 담당 22인으로 구성<sup>78)</sup>
- 사전심사 처리현황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추이에 일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호주 관세청은 2012년과 2013년 2,499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고객서비스 표준인 8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sup>79)</sup>. 기준에 미달한 사유로는 사전심사 신청건에 비하여 사전심사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sup>80)</sup>
  -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FTA 원산지 사전심사는 연간 1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매년 2,000건 내지 4,000건에 육박하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음

77) Director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Cargo Policy Branch

78) ACBPS, Trade Facilitation Best Practices in Use of Advance Rulings,

79) 2011~2012년에는 서비스만족도가 64.19%를, 2012~2013년에는 22.9%를 나타냄

80) 호주관세청, 2012-2013 연례보고서 Part 2 Our Program Performance,

<http://www.customs.gov.au/aboutus/annualreports/2013/p2c.html#footnotet5e>

〈표 Ⅲ-2〉 호주 사전심사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연도	2009~2010년	2010~2011년	2011~2012년	2012~2013년
과세가격	58	89	70	63
품목분류	4,026	2,918	3,009	2,407
FTA 원산지	34	42	26	29
합계	4,118	3,049	3,105	2,499

자료: ACBPS

## 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 1) 과세가격 사전심사(Valuation Advices)

- 호주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자가 관세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방법을 안내하는 제도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수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의 성격을 지님<sup>81)</sup>
  -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직접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주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됨
    - 수입신고서상의 화주(owner)는 물품을 적법한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화주에 대한 서비스로서 사전심사를 제공하는 것임. 공식적인 사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관청의 비공식적인 안내는 구속력이 없음
- 관세평가에 관한 의문사항을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사유에 대한 설명 등 심사결정을 위한 내용이 충분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는 물품이 수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내용이 충분하고, 신청서상에 관세법에 의거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선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수입자는 신청서가 등록된 이후부터 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아무 때나 신청서를

81)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No. 2008/039291 - Valuation Advices, 2012.

취하(withdrawal)할 수 있음

- 수입자는 관세청 ICS TAPIN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B174를 사용. 신청서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자동 무효 처리됨
  -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
    -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수입거래 당사자 정보
    - 필요한 경우 수입거래 당사자의 역할 및 기능
    - 거래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약정서 및 기타 합의서 등
    - 필요한 경우, 금융담보 및 지급약정에 관한 설명
    - 신청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사유에 관련된 관세법의 해당 규정을 명시
  
- 관세청은 신청서의 형식상 요건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처리번호를 부여하고,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신청서상 기재항목, 첨부서류,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신청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령 및 결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서류 등을 확인
  - 사안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회신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정보가 심사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기한 내에 추가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신청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전심사신청의 등록시점부터 관세청의 사전심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 사전심사 신청건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의 부족세액에 대한 행정제재로부터 면제됨
  - 나아가 수입자가 사전심사결정에 근거하여 사전심사결정의 효력기간 동안 향후 수

입될 물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부족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에 대한 행정제재에서 면제됨

- 모든 정황이 사전심사 결정과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화주는 상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수입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의 면제를 유사하게 적용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때에 이미 수입이 완료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부족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고 사전심사가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내려진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하는 때에 사전심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사전심사결정은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호주 전역의 모든 항구세관에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
  -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의 효력은 취소(cancel)되어, 새로운 사전심사결정이 여전히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함
  - 사전심사는 법률적으로 ACBPS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사전심사가 적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였다면 본 사전심사 내용을 준수(honour)함
  - 신청자가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사전심사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전심사결과들은 무효처리되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됨
  
- 법령의 개정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청은 5년 이하의 기한 내에는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사전심사결과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있거나, 관세청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 또는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서 거부한 경우
  - 선행 판결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입장을 바꾼 경우
  - 관세청에서 심사결과와 상충하는 다른 심사결정을 내린 경우
  - 이 경우 관세청의 재량으로 경유 또는 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된 사전심사결정을 여전히 적용(in-transit provision)<sup>82)</sup>할 수 있음

- 관세청의 사전심사결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결정의 담당자 (decision maker) 또는 직접 관세청 무역정책과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sup>83)</sup>에 심리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초로 제기한 불복청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의 심리절차로 송부됨
  - 심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또는 법원에 심리절차를 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자가 사전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최초 의사결정권자에게 본 심사결정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재심요청 사유 및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 2)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Advice)

- 수입자 및 그의 대리인은 수입 예정물품의 품목분류와 감면대상 여부에 관해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으로 TAPIN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서식 B102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음
  - 관세품목분류의견(Customs Classification Opinion, CCO<sup>84)</sup>)의 사례에 해당하는

82)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이 발효된 시점 이전에 수입된 물품 및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전후로 자가소비(home consumption)를 위해 수입된 물품, 상기 시점 이전에 수출을 위해 선적된 물품,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83) Director Valuation & Origin, Trade Policy and Implementation Branch, ACBPS Customs House(캔버라 소재), 멜버른 소재의 무역심사국(Trade Advice Unit)과 함께 행정심판원과 모든 법원에 제기되는 불복청구를 관할

84) 호주 관세청 웹사이트에 과세당국의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중복심사대상으로 분류

- 신청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관하여 AAT, 연방법원에서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심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보류
  - 여러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되는 물품
  - 감면적용 신청이 진행중인 물품
  - 전자신청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항목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호주 전 지역의 관세청에서 유효하고 과세관청 당사자를 구속함
- 사전심사결정은 특정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유사한 물품 또는 동일한 수출자와 다른 수입자 간의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
- 한편, 관세청의 재량으로 법령의 개정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동종물품에 대해 상충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경우<sup>85)</sup>
  - 사전심사결정이 관세청의 심리절차에 부쳐진 경우, 행정심판원 또는 연방법원의 외부심리가 진행중인 경우
  - 관세청이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의견을 변경한 경우
  - 위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 가운데 법령의 개정 또는 신청서상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이 취소되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일 전후로 28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취소 또는 변경 이전의 결정서를 적용(in-transit)<sup>86)</sup>

---

명한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CCO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음

- 85)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상충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상충하는 CCO를 인지한 경우 즉시 관세정책부(Director Tariff Policy)에 고지하여야 함
- 86) 심사결정이 내려진 날과 심사결정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이에 수입된 물품 및 취소 또는 변경일 전후로 28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심사결정이 취소된 날 호주를 경유하는 물품, 호주로 수입된 날 전후로 28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 취소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오류로 인해 실제 적용되어야 할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거나 감면적용을 못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수입신고를 통해 납부한 관세 등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환급을 신청하거나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사전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 등이 면제됨

### 3)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ice Rulings)

- 호주의 수입자, 상대 체약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때의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함께 해당 FTA별 서식을 제출하면, 관세당국은 모든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sup>87)</sup>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 호주-미국 FTA의 원산지는 B178, 호주-태국 FTA의 원산지는 B184, 기타 FTA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B659서식을 사용
  - 정보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심사결정사유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신청서 등록 이후 결정되기 전이라 할 지라도 호주 관세법 Subsection 243T(1)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과 관련한 벌칙이 면제되지 않음
  - 또한 수입신고서상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기재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일 것이라 우려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황색신고(amberline)’임을 표기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상기 S 243T(1)에 따른 벌칙은 황색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거짓 또는

87) 호주-미국 FTA 제6.3조에는 120일 이내로 규정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수입신고서상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불확실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사전심사결정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사전심사의 관련당사자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실과 정황이 동일하다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사전심사결정은 법적으로 호주 관세청을 구속하지는 않음. 단, 호주 관세청은 거짓 또는 허위 사실관계에 근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아닌 한, 심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함<sup>88)</sup>
  
- 법령의 개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cancel)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심사의 효력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함
  - 법령의 개정,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정황 및 근거법령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청자는 해당 건과 상충되는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결정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건은 무효(void)처리됨
  
-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권리구제는 우선 행정청에 당해 사안의 담당자(decision maker)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ACBPS의 소관부서(무역과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는, 예를 들어 행정심판원에 제기하는 외부심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음

---

88)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AUSFTA Division 10. 14. Customs to honour advice, 2009.,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MAFTA, 11. Origin advice rulings, 11.4.18.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o honour advice, 2012.

## 다.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 사전심사신청은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및 관례검색시스템(TAPIN, the Tariff and Precedents Information Network)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음. 단,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함
  - 전자신청 후 5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면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
- 호주 관세청은 심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의 효력은 5년간 유지됨
  - 사전심사 결정에 근거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 또는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이 없이 무효하며(invalid) 더 이상 관세청을 구속하지 않음
- 사전심사결정은 심사를 신청한 특정한 화주에 대하여 개별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수입자에게 양도(transfer)될 수 없음
- 동일한 물품을 과거에 수입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관세 및 간접세(GST, LCT 또는 WET) 납부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하여 납부한 경우 벌칙이 면제됨
  - 관세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4년까지 신청할 수 있음<sup>89)</sup>
- 심사결정의 내용에 반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관세청에 의한 내부 심리(internal review)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원 또는 연방법원에 호소하는 외부심리절차로 회부됨
  - 당해 결정에 반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함

89) 호주 관세규정(Customs Regulations 1926) 126(1)(e)

- 행정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관세청 또는 수입자는 연방법원(the Federal Court)에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호주 관세법상 사전심사에 대해 직접 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심리를 요청할 수 없지만, 관세 납부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의해 결정된 관세액과 관련해서는 불복청구가 가능
    - 행정심판원은 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정, 변경 또는 취소(set aside)할 수 있음
  
- 반면, 관세청에서 심사결정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revoke)할 수 있음
  - 관세청의 내부심리로 인해 심사결정이 변경되면 원 심사결정은 무효(voided)<sup>90)</sup> 화됨
  
- 심사결정의 번복과 관련된 물품의 처리는 수입신고 당시 사전심사처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전심사결정의 취소(revocation) 또는 보세처리(in-transit) 이전에 물품을 수입한 경우
    - 사전심사결정의 오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면(잘못된 심사결정으로 인해 납부한 관세가 더 적은 경우), 심사결정이 적용된 기간 동안 기존 심사결정을 적용하고 추가 징수를 하지 않음. 이는 수입 당시에 수입자가 과세관청의 심사결정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임
    - 사전심사결정의 오류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더 큰 경우, 수입자는 환급을 통해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사전심사결정이 적용되기 전에 물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자는 사전심사결정을 무시하고 관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사전심사에 대

90) 품목분류심사에 관하여 “voided”라는 용어는 이미 취소된(have been revoked)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 “cancelled”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voided”, “cancelled”, “revoked” 모두 사전심사를 취소하는 동일한 절차로서 “사용될 수 없는”의 같은 뜻을 일컫음.

한 신뢰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 4. 일본의 사전교시(事前教示)제도

##### 가. 개요

- 일본 관세청의 사전교시는 HS 코드 및 세율은 물론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과세가격, 타 법령의 요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진행되나, 전화 및 세관창구를 이용한 구두신청 및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구두신청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음
-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 나. 사전교시의 종류

###### 1) 과세가격 사전교시

-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구두(전화 및 세관창구에 문의) 또는 이메일로도 할 수 있으나 따로 서면교시 신청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납세)신고시 적용되지 않고, 답변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 세관에서 답변한 사전교시 회답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된 유효기간(최대 3년) 동안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시 적용됨
  -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의 경우 서면교시 신청에 준하여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사전교시 신청은 거래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 신청서(관세평가신청용) 양식 C-1000호-6의 1부 및 매매계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입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판단하여 사전교시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를 발급
  - 회답서에는 요청된 거래내용 요약, 신청인의 견해,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결정내용 및 사유가 기재됨
  -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추가정보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신고되었거나 신청된 거래가 가상, 불법 등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회답서는 발급되지 않음
  
- 회답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회답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사전교시 신청을 진행
  
- 수입신고시 회답서 사본이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회답서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세관은 해당 회답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처리
  
- 관세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되거나 사실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원 회답서는 적용 불가능

-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교사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에 대한 의견 신출서 C-1001호-1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사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재심사 신청은 사전교사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재심사 신청은 관세평가센터(National Valuation Center)에 전달되어 재검토됨
  -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
  
- 사전교시의 회답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됨
  - 무료로 접근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됨
  - 공개를 통한 조화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표 Ⅲ-3〉 일본 과세가격 사전교시의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 문제</li> <li>-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1방법)</li> <li>- 제1방법 이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문제</li> <li>- 생산지원비용</li> <li>- 로열티</li> <li>-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이 적용가능한지 여부</li> <li>- 기타 연속 판매에서의 과세가격 문제</li> </ul>
--

자료: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2009. 12

2) 품목분류 사전교시

-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문서로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두상(전화 및 세관창구 문의)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수입신고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교시 회답서의 답변 내용은 회답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수입신고 시 적용됨
  - 그러나, 질의 내용과 현품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등 관련 상황이 변경된 경우 회답서는 무효가 됨
  - 구두상이나 이메일로 사전교시를 신청한 경우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서면교시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교시 신청은 물품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신청양식 C-1000호 1부 및 견본, 사진, 도면 등 물품의 제조공정, 성분, 규격,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수입예정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가까운 세관에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의 세번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한 후 사전교시회답서를 발급함
  -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을 함
  - 전국의 각 세관에 사전교시 질의가 접수되면 접수한 세관에서 이에 대한 회답안을 작성하여 총괄관세감사관실에 송신하고, 총괄관세감사관실에서는 회답안을 심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절차
  
-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교시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양식

C1001호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사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재심사 신청은 사전교사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전교시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의 처리 건수는 연간 4,000여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식품 류임<sup>91)</sup>

### 3) 원산지 사전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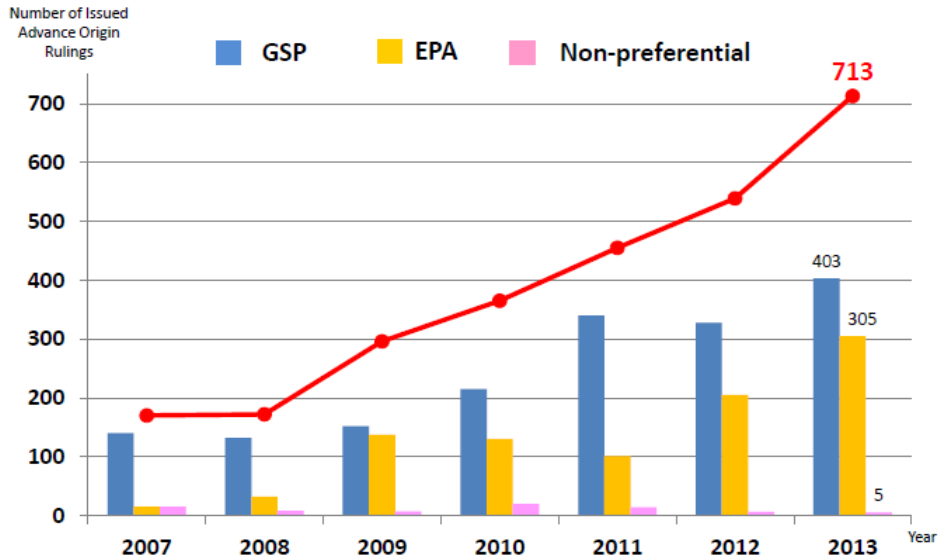
-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취급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실하게 수입통관단계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은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신청이 권장됨
- 원산지에 대한 서면 사전교시 신청은 원자재, 품목번호, 가공내용 및 제조방법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신청서(원산지 신청용) C-1000-2호 양식 1부와 원자재내역서, 제조공정도, 사진, 도면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

91)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의 원산지를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교사회답서(원산지 답변용) C-1000-3호를 발급함

- 세관이 발급한 답변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후 최대 3년간 수입신고 심사시 반영됨
  - 신청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취급이 변경된 경우, 답변내용이 법령 등의 적용을 잘못된 경우에 회답서의 내용은 수입시 적용되지 않음
  - 구두나 이메일로 사전교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서면교시 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서면 사전교시 및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답변 내용을 기재한 사전교사회답서가 발급된 이메일 사전교시의 경우 수입신고시 회답서를 첨부
  
- 받은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전교사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C-1000호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서면 사전교시와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된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 및 답변의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자 성명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공개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전체 원산지 사전교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Ⅲ-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증가 추이



자료: Advance Ruling on Origin(Japan's experience), WCO Origin Conference 2014, 2014. 1

## 다. 사전교시 절차

### 1) 사전교시 신청 및 심사

- 사전교시 신청은 사전교시 종류별로 지정된 신청서 양식에 필요항목을 기재하여 수입 예정지 관할 세관에 신청
  - 사전교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고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
  
- 사전교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여 검토 후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
  -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경우 30일 이내, 관세평가의 경우 90일 이내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

2) 사전교시 답변 및 적용

- 사전교시 회답서에는 회답서의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 처리일자, 심사대상물품의 품명 및 상세내역, HS 코드, 결정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사유 등이 기재됨

〈표 Ⅲ-4〉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답변 항목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성상, 성분비율 등)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9자리로 구성)
관세율	-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관세율 - 협정세율은 관세 및 조정금액의 합계
내국세율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내국세율(연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분류 이유	상기 세번으로 분류되는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자료: 일본 관세청

〈표 Ⅲ-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4자리, 6자리 또는 9자리로 구성)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제조공정, 가공이 행해진 국가 등)
종별	GSP와 EP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등
답변	종별에 근거한 답변
원산지 인증 이유	원산지 인정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자료: 일본 관세청

- 사전교시 회답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전교시 회답서의 발급일로부터 유효함<sup>92)</sup>
-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시 세관은 유효한 회답서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심사시 해당 회답서 내용에 따라 처리
- 사전교시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무료로 접근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됨
  - 공개를 통한 조화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3)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원 회답서는 적용 불가능

### 4) 이메일을 이용한 사전교시 제도

- 사전교시의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메일에 의한 신청도 가능
  - 이메일 본문에 각 양식에 따른 신청날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출입자 부호(있을 경우), 화물의 품명, 수입예정세관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여 세관의 사전교시 담당 메일주소로 송부
  - 관세율표 적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해 물품의 제법, 성상, 성분비율, 구조, 기

92) 일본 관세관계기본통달 7-19,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 능, 용도, 포장 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관세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국가의 가공, 제조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 적용, 원산지판정 및 관세평가에 대한 신청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기재

〈표 Ⅲ-6〉 이메일 신청서 작성 항목

품목분류 사전교시	원산지 사전교시	관세평가 사전교시
신청날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출입자 부호 (있을 경우)		
수입예정세관		
화물의 품명, 단가 및 제조시설		화물의 품명
신청 화물에 대한 사전교시 실적 유무 및 유사화물에 관련된 수입실적 유무		신청 사항
신청화물의 명세(성상, 성분비율, 구조, 기능, 용도, 포장 등)	신청 화물의 명세(가공, 제조에 관한 사항 등) 신청대상 협정의 명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 설명
관세율표 적용에 관한 의견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의견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자료: 일본 관세청

- 사전교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고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
  -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답변
-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구두 사전교시와 같이 취급되므로 수입신고시 세관심사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고 수입시 세관심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문서에 의

한 신청이 요구됨

-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교시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되어 수입시에 적용됨
- 제법, 성분비율 등 기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안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에 의한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문서에 의한 신청이 요구됨
  - 또한, 화상,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로 시스템의 용량이 초과되어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도 우려되므로 이런 경우 서면 신청이 요구됨
-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은 다음의 경우 회답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문서로 신청하여야 함
  -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교시
    - 가상의 화물에 관한 신청
    - 신청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신청물품에 대해 고소 또는 소송중으로 관세율표 적용에 관하여 분쟁 중인 경우
    - 수입신고 물품에 관한 신청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 당해 물품의 제법, 성상 등을 파악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대리인 이외의 신청
  - 관세평가 사전교시
    - 가정의 사실 관계에 근거한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구체적인 거래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화물에 관한 신청
    - 판단에 필요한 거래 내용 설명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신청
    - 관세 등의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신청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거래 등에 대해 사후 조사, 고소 또는 소송중으로 관세 평가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는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분쟁 또는 분쟁의 우려가 매우 높은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수입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브로커 등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의 사정을 대체로 알고 있는 이해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신청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내용은 사전서면교시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대상이 됨
  - 인터넷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서(C-1000호-13)에 날인 또는 서명 이미지를 데이터로 첨부하여 신청
  - 구체적인 화물 및 거래에 대한 신청
  - 견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 서면교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신청
  
- 전환을 할 경우 세관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서면질의를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통지 C-1000호-14를 송부하고 전환 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사전서면교시의 경우와 같게 됨
  -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답변
  - 세관은 전환을 실시한 후 원칙적으로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경우 30일, 관세평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
  - 답변 내용은 해당 답변서가 발급된 후 3년간 수입신고 심사시에 적용됨
  - 전환된 사전교시 신청 및 답변 내용은 세관 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라. 재심사 신청

- 사전교시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사전교시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청서(C-1001호 및 C-1001호-1)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은 관련부서에 전달되어 재검토되어 보통 30일 이내 재검토 답변이 이루어짐

## 5.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

### 가. 개요

-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43.1(1)과 60, 그리고 NAFTA 등 각 개별 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관세법에 규정된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은 Custom's Memorandum D11-11-1(National Customs Rulings), Custom's Memorandum D11-11-3(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Custom's Memorandum D11-4-16(Advance Rulings for origin)에 정리되어 있음
- 수입자, 수출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은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에 대해 국가세관판결(National Customs Ruling: NCR)<sup>93)</sup>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캐나다의 사전심사는 수입예정인 지역의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약칭 CBSA)의 지역세관에서 담당
  - 물품이 여러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세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
- CBSA는 매년 대략 2,700건의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90건이 CBSA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음<sup>94)</sup>

93) 국가세관판결(NCR)은 단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특정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 규정에 대해 수입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면진술임(수출자와 생산자는 신청 불가능)

94) Revenue and Trade Management Program(Trade Compliance), CBSA, 2013. 4, pp.22~23

## 나. 사전심사의 종류

### 1) 과세가격 사전심사<sup>95)</sup>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CBSA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부정확한 관세평가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한 제도로 심사당국은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함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건당 한 종류의 거래에 한정됨
  - 예를 들어, 각각 거래가격과 산정가격을 적용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판매자와의 거래에 대한 심사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 사전심사 신청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당해 물품에 대한 충분한 상세내역이 요구됨
  - 해당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 신용장, 구매주문확인서, 계약서, 대금결제 증빙서류, 보증 계약서, 판매조건, 로열티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권 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운임 증빙서류 등의 서류가 요구됨
  - 증빙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심사담당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CBSA로부터의 사전심사 결정은 당해 물품의 수입시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데 적용됨

### 2) 품목분류 사전심사<sup>96)</sup>

- 일반적으로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련 물품의 캐나다 내 수입자, 국외 수출자 및 생산자, 수입물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통관 대리인 등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95)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96)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물품의 수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신청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역세관의 무역거래 법규준수 부서(Trade Compliance Division)에 제출되어야 함
  - 캐나다 내 신청인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입예정지역 또는 수입자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Memorandum D11-11-3의 부속서 A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관련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 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정보, 수입항, 과거 수입실적 여부, 품명·기능·구조 등 물품 명세, 제조 공정, 포장명세, 물품의 용도, 제품 카다로그·도면·사진, 수입자의 예상 세번 등 기재
  - 필요한 경우 분석보고서나 견본 등을 제출하며, 수입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음
  - 신청서 모든 필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전심사 결정서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필요
-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심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불충분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담당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지정된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통지에 언급된 요건을 따라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하나의 개별 제품으로 한정
  - 그러나, 한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다른 규격을 가진 유사제품에도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CBSA는 같은 종류의 여러 규격을 가진 제품군에 대해서 심사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음<sup>97)</sup>
  - 이 경우 CBSA는 하나의 신청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 사전심사 담당기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심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제시된 양식에 규정되거나 기타 사전심사 결정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은 이와 상충되는 NCR이나 통지 및 의견 등에 우선

### 3)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 가) 특혜 원산지<sup>98)</sup>

-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IFTA(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또는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특혜 적용 여부 및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
  
-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캐나다 내 수입자, FTA 체결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해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신청 가능

---

97) 예를 들어,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이나 사이즈 등의 차이가 있는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98) Memorandum D11-4-16, Advance Rulings Under Free Trade Agreements

-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생산자도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적어도 물품의 수입되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신청인의 서명과 함께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어야 함
  - 사전심사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이 계속 진행 중인 수입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CBSA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수입예정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이관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본청의 원산지 및 관세평가 부서(Origin and Valuation Division)로 제출하여야 함
- 사전심사 신청은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쟁점사항으로 제한됨
  - 심사당국은 5개 이상의 별도의 제품과 관련된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나, 일련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원산지표기)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들이 서로 유사하여 하나의 상품에 대한 결정이 나머지 상품들에 대한 대표적인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가능
- 심사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인이 보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유사한 쟁점에 대해 재심사나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필요정보가 접수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급되므로 사전심사 신청시 이러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함
  - 수입예정일로부터 120일 미만의 기간을 가진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 전에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당국이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120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따라 처리됨
  
- 심사담당자는 모든 관련 원재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사전심사 결정을 하고 사전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신청인에게 제공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됨
  
-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서가 교부된 날이나 결정서에 별도로 명시된 날(수입예정일보다 늦지 않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 이후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
  - 사전심사 신청인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원재료 사실관계 및 상황이 사전심사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수정 또는 취소되지 않은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 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반영됨
  - 수입시 사전심사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수입자는 캐나다 세관송장, 상업송장, 캐나다세관분류양식 등의 서류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사전심사 결정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면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사전심사의 혜택은 오직 사전심사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한 당사자에게 적용됨

-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자도 수입시 해당 사전심사결정번호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관세당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 되는 것임
  - 또한, FTA 일방 당사자에게 발급한 사전심사 결정서는 상대국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은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의 사실관계 및 상황에 변화가 없고 모든 거래조건이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일치하며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함
    - 일부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심사결정서에 언급됨
    - 사전심사 결정이 사전심사 전후에 이루어진 국가세관 판결, 통지, 의견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이 우선함
- 심사담당자는 사전심사 대상물품이 사전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산지검증, 원산지 재심사, 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나 법원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은 심사결정서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재심사 신청, 수정 또는 철회 가능
- 심사담당 세관 및 CBSA 본청은 다음의 경우 심사결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사실관계, 물품이나 원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를 결정하는 사전심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이 각 FTA 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에 기초가 되는 구성원재료의 사실관계나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 FTA 특혜관세 적용 비대상이거나 철회된 물품의 경우
    -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부가가치기준 등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성원재료 내용이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사전심사 내용과 다른 경우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시 부가가치 또는 재료비를 계산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구성원재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법원이나 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캐나다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등
-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은 수정이나 취소한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됨
- 필요한 경우 심사당국은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 발생일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 사실에 대한 오류나 구성원재료에 누락이 있어 수정이나 취소된 사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수정이나 취소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공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한 특정 내용이 공개됨
-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90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진행한 관세당국은 재심사 결과 통지를 사전심사 결정서의 형식으로 추가 발급
- 재심사 요청서에는 해당 사전심사결정번호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함
  - 재심사 결과 사전심사 결정을 정정한 경우 재심사 결정은 원 사전심사 발급일까지 소급하여 적용

나) 비특혜 원산지<sup>99)</sup>

-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는 NAFTA, CIFTA 및 CCFTA의 사전심사제도와 다른 것으로

99)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WTO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에 따라 MFN(Most-Favoured-Nation) 관세대우가 부여된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한 사전심사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서면으로 결정서가 제공됨

- 비특혜 원산지는 MFN 관세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원산지 표시 요구 사항, 그리고 차별적 수량제한이나 관세할당과 같이 비특혜 조치로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 규정을 포함

- 정부조달이나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까지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캐나다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출입이라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계속 진행중인 수입과 관련된 사전심사 신청은 미래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서는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사전심사결정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하지 않음
- 제공되는 정보는 신청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목적의 사전심사를 제외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입예정지역의 무역행정관리청(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TAS)내 민원부서(Client Service)에 제출되어야 함

- 수입예정지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 관할 지역으로 신청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할지역의 TAS내 원산지표시 전문가에게 별도로

제출되어야 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목적의 비특혜 사전심사 신청서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TAS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서로 제출되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필요 정보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 물품의 신청인에게 발급
  - 사전심사 결정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심사담당 부서가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사실관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 3년간 유효함
  
-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단지 행정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재심사를 위한 절차가 없으나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NA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 관세조치에 대한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재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NAFTA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사전심사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수입자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 규정에 따라 산정된 관세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4) 기타<sup>100)</sup>

가)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 ICL)에 대한 심사

- 캐나다에서는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수입규제조치법

---

100)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NCR)

(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캐나다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FAITC)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고 안전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가능

○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음<sup>101)</sup>

□ 그리고, ICL상의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적용물품은 관세율표에서 별도로 지정한 농산물분야의 물품과 관련이 있음

□ 이에 따라, FAITC의 허가가 필요한 ICL 물품 및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원칙이 적용되는 TRQ 대상 농산물의 수입에 대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은 심사결정서 발급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심사 결정서에는 할당물량 이내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과 할당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언급됨

#### 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심사

□ 관세율표 9807.00.00과 9898.00.00에 분류되는 수입금지 물품<sup>102)</sup>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관세율표 9899.00.00에 분류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수입자나 수출자가 수입 전에 사전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CBSA 담당자는 제출된 샘플이 실제 수입시 관세율표 9899.00.00의 음란물에 분류되는 물품인지에 대한 의견만을 제공함

101) kotra 국가정보 -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

102) 중고 항공기,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 잘못된 원산지 정보 기재 물품 및 상표권상 수입이 금지된 물품, 중고자동차, 총기류 등

## 다. 사전심사 절차

### 1)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

- 사전심사는 수입이 예정된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수입자의 관할로 신청할 수 있음
  - CBSA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전심사신청을 이관할 수 있음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본청의 Origin and Valuation Division으로 제출하여야 함
  
- CBSA는 제출된 사전심사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
  -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요청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정된 기간 내 충분한 보충정보의 제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전심사는 종료되고 철회된 사안으로 간주
  - 또한, CBSA는 심사 중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CBSA는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 결정
  - 모든 필요 정보들이 제출된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사전심사 신청이 미비하여 보완이 요청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 결정
  - 따라서, 수입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전에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전심사요청은 심사결정서가 발급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자에 의해 철회 가능

## 2) 심사 결정

- 심사결정서는 서면으로 사전심사 번호, 품목분류 번호와 결정의 사유 등 심사결정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며 신청 당시 작성된 언어로 발급됨
- 심사 결정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 발생일을 결정서에 별도로 명시함
  - 심사결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 수입되고 결정서에 표기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적용
-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재검토·재결정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의 발급은 지연될 수 있음
  - 또한, 심사담당자는 예정된 수입일 이전에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은 취소되지 않은 이전의 결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경우 더 빠른 날짜에 발급된 건이 우선함
  - 사전심사 결정과 NCR, CBSA의 통지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본청이나 지역세관은 즉시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이나 NCR을 발급하거나 수정 또는 취소
- 다음의 경우 CBSA는 심사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심사 거절된 사유와 함께 해당 서면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
  - 해당 요청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IT), 의회, 자유무역협정위원회 혹은 이와 관련한 각종 관련 단체에서 인정받기 이전 단계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경우
  - 동일제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재결정하거나 동일 쟁점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이

재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

- 신청된 물품이 검증의 대상인 경우
- 모든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이 가상의 상황인 경우
- 카다로그 상품과 같이 여러 물품과 관련된 신청인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이 입안예고된 법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경우
- 이미 발생하여 통관 종료된 수입과 관련된 요청일 경우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은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 인적정보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상표명 및 품명 등의 항목이 공개됨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이나 재검토 요청시 영업비밀에 대해 CBSA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3) 심사결정의 효력과 적용

□ 수입된 물품의 구성원재료 및 상황이 사전심사 신청시에 제출된 원재료 및 상황과 동일하고, 사전심사 결정서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결정서가 수정·변경이나 철회·취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CBSA를 구속함

- 그러나,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된 이후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구성원재료와 관련된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CBSA를 구속하지 않으며, CBSA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취소나 수정할 수 있음
-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서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정황이 동일하고, 해당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 결정이 적용됨
-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하거나 수정이나 철회의 통지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시 사전심사 결정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캐나다 세관 송장(Canada Customs Invoice, Form CI1), 상업송장, 캐나다 세관물품분류양식 (Canada Customs Coding Form, Form B3), CADEX(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시스템<sup>103)</sup>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 유효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정황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의 책임으로 사전심사결정 번호를 인용함으로써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 다른 수입자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번호를 인용하는 것은 해당 수입에 대해 CBSA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임
- 사전심사결정서는 CBSA가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 논쟁 결과에 따라 수정될 때까지 유효함
  - 특정 사전심사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질 수도 있음

#### 4)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CBSA는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심사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사전심사가 물품의 품목분류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법원의 결정이나 관련법의 변경내용을 따라야 하는 경우
  -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
  - 관세청장이 법 60(4)(b)에 근거하여 사전심사를 변경하는 경우
- 사전심사는 CBSA 본청이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지역세관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103) CADEX는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이미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관양식을 전자 통신 형태로 송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 2013.11, p. 101)

- 그리고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수정 또는 철회 신청 가능
  
-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서면통지는 새로운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며,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취소나 변경된 심사결정서의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수정이나 취소 통지의 발급일에 원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중단됨
  - 취소나 변경에 대한 서면통지에 취소나 변경의 효력 발생일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법률의 개정으로 사전심사 결정이 무효가 된 경우 신청인은 원 결정서를 발급한 CBSA 세관에 새로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는 취소나 변경일 이후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효력 발생
  - 사전심사 신청에 오류가 있거나 구성 원재료를 누락하여 심사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전심사에 근거가 되는 원재료나 상황이 변경되어 결정서 발급 후 정정하기 위해 효력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 결정은 관련 상황의 변경일로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 그리고, 해당 심사결정의 수정이나 취소가 신청인에게 이득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전심사의 취소나 변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CBSA는 신청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심사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신청인이 해당 심사결정을 신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손해라고 입증하여 신청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을 연기할 수 있음
  - CBSA는 연기된 효력발생일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통지하며, 해당 지연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평가하지 않음

## 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수입 전에 사전심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수취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그 뒤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 재심사 요청의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재심사 신청은 우편 또는 직접 재심사를 담당하는 부서(Recourse Division)에 하거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담당부서에 수신을 “Recourse Division”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재심사 신청서는 신청인의 서명을 포함하여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함
  
- CBSA는 종종 사전심사를 근거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검증하고 조정하며 신청 당사자가 자진 조정할 수도 있음
  - CBSA로부터 사전심사 결과가 조정되었음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에 대한 서면결정은 원 사전심사 결정서를 대체하며 유리한 재심사 결정은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 근거가 됨
  - 또한, 분쟁 중인 사전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CBSA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CITT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연방법원에 불복청구 가능하나, 단지 법률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6. 영국

### 가. 개요

-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유럽공동체관세법(CCC) 2913/92 제12조와 CCIP(Commission Regulation(EEC) 2454/93)에 의거하여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영국 국세·관세청, 이하 HMRC)에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 HMRC 관세심사팀(ECSM Duty Liability Team)에서 주관하며, 다만 일반원산지에 관한 신청서는 기술혁신부서(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있음
- 법적 근거는 EC 관세법(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제12조 및 관세규정(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제2조(BTI)와 제5조 내지 제14조(BOI)에서 찾아볼 수 있음<sup>104)</sup>
- EU에서 사전심사는 EU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및 원산지에 대한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BTI와 BOI는 수출입신고 전에 무역업자에게 각각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임
  - 실제로 수출입거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수출입이 완료됐거나 통관절차가 진행중인 물품은 BTI 또는 BOI 대상이 될 수 없음
  -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와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포함

104) 다만, EU 원산지 의정서에는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수출입업자들이 유리한 BTI 결정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는 BTI를 당해 결정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에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의 관세당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 또는 WTO의 품목분류 결정에 의해 BTI 결정 내용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높은 세율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결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BTI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CCC 제217조에 따라 종전의 BTI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관세법 제90조(1)(b)에도 동일하게 규정
  
- BTI와 BOI 결정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 즉 모든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내려진 결정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당시와 물품 및 상황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BTI와 BOI 결정의 효력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물품의 화주에 대하여, 관세당국이 정보를 제공한 날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당국을 구속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역시 BTI 또는 BOI의 당사자(holder)와 결정서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증거로서 BTI를 참조하는 것은 허용됨을 판시<sup>105)</sup>
    - 따라서 EU 외 제3국의 BTI 당사자(non-EU BTI holder)는 본인을 대리하여 수입신고를 위임할 EU 소재 물류서비스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외 수출입업자 대신 물류서비스업자가 BTI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회원국의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BTI 데이터베이스는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05) ECJ, 15 September 2005, nr. C-495/03(Intermodal), ECJ, 07 April 2011, nr. C-153/10(Sony Supply Chain Solutions)

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EBTI-database(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database)에서 조회할 수 있음

## 2) EU 신관세법의 개정 내용

- 개정 관세법에도 BTI와 BOI의 대상은 수출입예정물품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당국 및 수출입자와 긴밀한 공조와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촉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106)</sup>
-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sup>107)</sup>에 따른 BTI와 BOI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sup>108)</sup>
- 신관세법의 적용 이후 BTI 또는 BOI 결정서는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holder) 또한 구속함<sup>109)</sup>
  - BTI 및 BOI 결정이 당사자 또한 기속하게 됨으로써, 관세당국의 의사결정절차에

106) European Union Modernised Customs Code(MCC) Article 8 Provision of informat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1. Any person may reques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from the customs authorities. Such a request may be refused where it does not relate to an import or export operation actually envisaged.
2.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maintain a regular dialogue with economic operators and other authori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They shall promote transparency by making the legislation, administrative rulings and application form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vailable to economic operators free of charge and, wherever practical, through the Internet.

107)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 「Regulation (EEC) No 3925/91」, 「Regulation (EEC) No 2913/92」(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 「Regulation (EC) No 1207/2001」는 2016년 6월 1일자로 폐지함. EU 신관세법이 발효된 날(2013년 10월 30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EU집행위원회에서 위임법령(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을 채택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108) 주EU 대사관, volume 1, number 2, "Binding Tariff Information," *Deloitte, Customs & Global Trade Newsletter*, 2013. 5.

109) 기속력의 범위와 유효기간의 개정과 관련하여 BTI 당사자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BTI 결정을 받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잘못된 BTI결정을 신고함으로써 허위신고죄의 성립 등의 형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품목군별 전문팀의 수요가 전망되고 있음

- 또한 BTI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6년에서 BOI와 같이 3년으로 단축시켜 BTI와 BOI의 유효기간을 통일
  - 급격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최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반영
  
- 그리고 기존에는 관세당국이 결정 당사자에게 세관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데에 반하여, 유효한 BTI 및 BOI 소지자는 신고서에 당해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개정
  - BTI 결정서의 당사자는 통관절차의 진행중에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BTI 적용대상 물품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하고 BTI 결정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이밖에도 품목분류에 관하여 회원국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목적에 제한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있음
  - BTI의 대상물품에 '동종물품(one type of goods)'의 개념을 삽입. 이는 유사한 특징을 가졌지만 품목분류와는 전혀 무관한 특별한 특성을 가진 물품을 뜻함
  - 회원국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
    - 동일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이견을 가지는 양자 회원국은 합의절차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간의 협의(consult)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 조정에 실패한 경우 각 회원국은 즉시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BTI와 BOI의 신청은 다음 경우에는 EU 세관당국에 접수되지 않음
    - BTI 또는 BOI 보유자가 이미 발급받은 동일 상품에 대해 발급한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 신청한 경우, 특히 BOI의 경우는 같은 원산지 기준하에서의 신청
    - BTI 또는 BOI의 의도된 사용, 세관절차를 위해 의도된 사용과 관련이 없는 신청

## 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 1)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품목분류 사전심사)

- 신청에 의한 서면상의 품목분류 심사결정으로서, 통관 시에 정확한 품목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관세 등 납부세액과 허가, 승인 등의 요건확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CCC 규정상 BTI 신청 대상은 수출입 통관절차가 실제로 예정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서에 신청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
  - 이는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을 의미하며, BTI 결정은 소급하여 내려질 수 없음
  - 따라서 수출입 통관이 예정되지 않은 물품,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BTI 신청서는 반려됨
  - 다른 회원국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BTI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신청 품목당 하나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의 성분, 기술명세서 및 특정 기능 등 품목의 특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필요한 경우 샘플을 제출할 수 있으나, 섬유류, 신발류 및 도자기 제품(ceramics)은 항상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 물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TI 신청서는 반려됨
-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HMRC에서 샘플에 대한 실험실에서 분석, 기술자문, 반품에 필요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 통지서에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와 함께 효력의 기산일을 나타냄
  - 결정서가 발급된 물품을 표시하는 참조번호, 사전심사 결정서의 당사자(holder)의 성명, 주소

-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사전심사 결정의 법적 근거
- 결정일로부터 3년간 모든 관세당국을 법적으로 구속함(legally binding)
  -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정 요구사항은 아님
-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은 당해 사전심사 결정서의 당사자(holder)에게만 유효하며, 양도 불가능함(not transferable)
-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된 물품의 화주는 수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의 44란에 BTI 참조번호를 기입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BTI 결정서의 존재 여부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BTI 결정서의 전자사본을 발급하여 EU BTI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모든 EU 회원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관부서에 심리(Departmental review)를 신청할 수 있음

## 2)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원산지 사전심사)<sup>110)</sup>

- BOI는 상호주의 협정 및 GSP(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와 같이 호혜주의적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와 기타 관세 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모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 일반원산지에는 특혜관세율을 제외한 반덤핑관세 대상 여부, 관세율 할당 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가 포함됨

---

110) HMRC Notice No. 831

- BOI 결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EC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EU회원국의 모든 관세당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이나 제품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
  -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하여 생산과정이나 계약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BOI 결정의 효력이 유효
  - 또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BOI에 기술된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생산과정의 정확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BOI는 당해 수출입 신고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입자는 품목당 개별적으로 BOI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 BOI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BOI 결정서가 발급되기 전에 BOI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BOI 결정 당사자만 가능함
  
- BOI 신청서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번 항목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holder), 8번 항목인 물품 및 원재료 명세, 물품의 상표와 모델번호 등 영업기밀로 다루고자 하는 항목들을 기입하는 9번 항목과 12번에 기재하는 EXW 가격 정보는 기밀로 처리됨
  - BOI 신청인 및 결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름·주소 등 기본 정보,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 번호, 거래 유형,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거법령, 물품 설명, 영업기밀 등 특이 사항,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EXW 가격, 샘플 등,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기존에 발급받았던 BOI 또는 BTI 참조번호, 서명
  -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재료, 부분품 및 부품의 원산지, 품목분류번호와 가격과 공정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국 소재 제조자가 이를

기피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HMRC 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BOI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실제로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거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BOI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 BOI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관세 및 내국세관리법(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ection 167, 168 및 170에 따른 벌칙이 적용됨
- BOI 처리는 수수료 없이 진행되고, 신청서를 심사하여 45일 이내<sup>111)</sup>에 결정서를 발급하고 있음
  - 샘플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및 샘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BOI결정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와 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이 충분한지를 심사
- BOI 결정서는 BOI를 발급받고자 하는 당사자(holder)에게만 적용되며, 이후에 수입되는 동일한(identical) 물품에만 적용될 수 있음
- BOI 결정서의 내용은 결정서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며, 만료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및 EC 법령과 상충되어 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 그러나 신청인이 당해 물품이 해당 거래계약상의 물품임을 입증한 경우 6개월까지는 당해 결정서의 내용이 유효함

---

111) EC 관세법에서는 처리기간을 최대 15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HMRC에서는 이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사전심사 절차<sup>112)113)</sup>

- 개별 품목에 대해 각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의 명의로 직접 대리하는 신청인만 신청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은 서면으로 회원국, BTI 및 BOI가 적용될 회원국 또는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sup>114)115)</sup>에 제출
-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결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사전심사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정보는 각 회원국의 재량으로 기밀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holder)의 화주 성명 및 주소(신청서 2번 항목)와 물품 가격 및 상표권, 모델번호, 성분분석결과 등의 정보(신청서 9번 항목)는 관세 당국에서 기밀로 지정할 수 있음
    - 결정서를 발급받는 자(holder) 또는 신청인(applicant)의 성명, 주소
    - BTI: 결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의 종류: (6단위의 HS(the Harmonised System) 번호, 8단위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the Combined Nomenclature), 쿼터, 반덤핑관세 등의 비관세무역조치 목적의 9단위 및 10단위 TARIC), 물품과 품목 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 예상 품목분류번호(the classification envisaged)
    - BOI: 근거 법령(EU 관세법 제22조(비특혜원산지) 또는 제27조(특혜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사용된 원재료 및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및 기타 사항

112)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_en.htm](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_en.htm)

113)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rules\\_origin/introduction/index\\_en.htm](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rules_origin/introduction/index_en.htm)

114) OJ C 23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3:246:0010:0014:EN:PDF>

115) OJ C 10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1:106:0006:0010:EN:PDF>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명세서 또는 기타 특정 기준). 특히 원산지 결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예상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함, 물품의 성분, 성분 조사에 사용된 방법 및 필요한 경우 EXW 가격

-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등에 대한 첨부서류
-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의서
-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루어지는 기타 특이사항
-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사전심사 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한 사전심사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필수항목임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 단, EU 관세법 제15조<sup>116)</sup>에 따른 회원국 간의 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

□ 신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BTI의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BOI의 경우 15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유럽 관세법 부속서 1A의 서면 양식을 사용함
- 통지 기한은 관세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때부터 산정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기산일의 발효시점을 통지하여야 함
- 심사 결정통지서에는 기밀로 취급될 항목들이 표시되어야 하며, 관세법 제243조에 따른 불복청구권을 명시하여야 함

---

116) All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shall be covered by the duty of professional secrecy. It shall not be discl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out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person or authority providing it.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shall, however, be permitte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obliged to do so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force,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edings. Any disclosure or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shall fully comply with prevailing data protection provisions, in particular Directive 95/46/EC and Regulation (EC) No 45/2001.

-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 또한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사용이 가능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샘플 분석 및 전문가의 검토 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부과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을 받은 자(holder)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는 원산지 결정대상 물품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황들(circumstances)이 모든 면에서 사전심사 결정서의 물품 및 정황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통관대상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은 해당 사전심사 결정국가가 아닌 모든 EC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결정일(the date of issue)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음
  
- 다만, 품목분류에 관한 법령의 공포, 국제적인 해석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에 근거한 사전심사 결정은 취소(annul)될 수 있음
  - 회원국 간에 EC 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sup>117)</sup>의 해설서(explanatory note) 또는 유럽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결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국 간에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있어 해설서(explanatory note) 및 의견서 또는 유럽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제적인 수준에서 품목분류 의견 또는 품목분류표(Nomenclature) 해설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수준에서 WTO 원산지에 관한 협약 또는 이 협약의 해석에

---

117) 1952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채택

관한 해설서 또는 원산지 의견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자는 유예기간(“period of grace”) 동안 BTI 결정을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국제적인 해석의 변경 또는 신청서 정보에 오류 또는 부족이 있어 BTI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오류에 관한 공표 또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당해 BTI 결정서를 적용할 수 있음
  
- 만약 결정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sup>118)</sup>, 유럽 집행위원회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쟁점 사안을 다음 달 회의 안건으로 발의하거나 다음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함
  - 절차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통일된 품목분류 및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결정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자(Decision maker)에 새로운 정보 또는 재심사를 신청, 결정당사자가 아닌 HMRC의 ‘ECSM Review and Appeals Team’에 심리를 신청하거나 HMRC와 독립기관인 행정재판소(the Tribunal)에 직접 불복청구를 신청하는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우선 해당 기관에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추가정보를 제출하거나 결정기관의 오류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discussion)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대부분의 사안이 이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고 있음<sup>119)</sup>
  -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정서를 발급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담당자에게 심리(review)를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재판소(tax tribunal)에 심리(hearing)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118)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란, 동일한 품목번호에 해당하고 동일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 품목의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및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를 말함

119) factsheet HMRC1(<http://www.hmrc.gov.uk/factsheets/hmrc1.pdf>)

〈표 Ⅲ-7〉 EU 사전심사제도

구분	BTI	BOI
신청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을 발급받는 자 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li> <li>- 재발급 여부</li> <li>- 결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의 종류: (HS/CN/TARIC)</li> <li>- 물품과 품목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li> <li>-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li> <li>-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등에 대한 첨부서류</li> <li>- 예상 품목분류번호</li> <li>-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의서</li> <li>-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루어지는 기타 특이사항</li> <li>-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BTI 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한 BTI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지 여부</li> <li>- BTI 결정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을 발급받는 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li> <li>- 근거조항(EU 관세법 제22조: 비특혜원산지 및 제27조: 특혜원산지)</li> <li>- 물품과 품목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li> <li>-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 및 필요한 경우 EXW 가격</li> <li>- 원산지 결정기준, 사용된 원재료 및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및 기타 사항(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명세서 또는 기타 특정 기준). 특히 원산지 결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예상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함</li> <li>-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및 제조공정 및 원재료에 가해진 작업 등에 관한 명세서</li> <li>-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의서</li> <li>-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루어지는 기타 특이사항</li> <li>-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BOI 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한 BOI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지 여부</li> <li>- BOI 결정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li> </ul>
처리기간	3개월	150일 이내
유효기간	3년	

- 심리의 경우 행정청에서 심리절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절차 진행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 심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 7. 중국의 사전심사제도

### 가. 개요

- 중국은 관세법 제43조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자는 품목분류 등에 대해 중국 해관에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의 상세 내용에 대해 조례 등의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동일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품목분류 등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해관은 상품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나. 사전심사의 종류

#### 1) 과세가격 사전심사<sup>120)</sup>

- 사전가격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수입 해관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
  - 중국해관은 통관의 효율성 제고,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정확한 평가 및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잠정규정」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직할해관 관세심사부서에서 관할 구역내 사전가격 심사업무를 수행
- 기업분류기준 A류, AA류 해당 기업으로서 수입물품 시장가격 변동이 큰 물품, 수입물품의 가격자료가 부족한 물품 등 수입 당시 가격확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120) 관세청 북경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Notic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n Issuing the Interim Provisions on the Pre-examination of the Price of Imported Goods, 2011

- 시장가격 변동이 심하여 적시에 가격자료 파악이 곤란한 물품
  - 가격자료가 부족하여 일선 해관에서 수차례 가격을 질의한 물품
  - 가격심사 중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존재하여 수차례 심사를 요청한 물품<sup>121)</sup>
-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물품수입지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관은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사전가격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심사 결정서는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신청기업은 실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의 비고란에 사전가격심사 결정서 번호를 기재하고 사전가격심사 결정서 사본과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해관은 실제 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사전가격심사 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를 산정함
    - 실제 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상의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
  - 해관은 아직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sup>122)</sup>

## 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sup>123)</sup>

- 중국해관에 등록된 수출입 기업은 수출입통관 전에 해관에 수출입 화물의 사전품목분

121) 관세청(북경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p. 18

122) China Customs to issue Advanced Valuation Rulings, PWC(www.pwccustoms.com)

12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사전회시 잠정시행방법(Decre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158), 2009. 6

류를 신청하여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

- 수출입 기업은 화물의 수출입신고 45일 전에 수출입지 성급해관<sup>124)</sup>에 사전품목분류를 신청
-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지정한 서면양식의 신청서에 및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샘플을 해관에 제공해야 함<sup>125)</sup>

□ 해관은 품목분류를 결정 후 신청인에게 분류결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결정서는 당해 결정의 신청인과 결정을 내린 해관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지님<sup>126)</sup>

-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인정하는 HS 코드를 적용해야 함<sup>127)</sup>
- 당해 결정서에 기술된 화물의 품목분류는 그 유효기간 1년 내에만 구속력이 있음

#### 가) 신청서의 제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해관에 등록된 화물의 수출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함

-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한 물품은 신청인이 실제로 수출입하거나 또는 수출입할 계획인 물품이어야 함
- 1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서에는 한 가지 물품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여러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해관에 품목분류사전회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신청인은 해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서면형식으로 수출입지 해관에 제출

-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해관이 각각 1부씩 보관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신청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sup>128)</sup>, 예상 수출입일자 및 수

124) 예: 상하이세관, 남경세관 등

1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2013.12, p. 51

126) 관세청(북경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 · 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p. 19

1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2013.12, p. 51

128) 품명, 규격, 모델번호, 구성원리, 기능, 용도, 성분, 가공방법, 분석방법 등 상세 내역

출입항의 내용이 기재됨

- 해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sup>129)</sup>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와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신청업체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함
- 신청인이 첨부한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외국어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사전회시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수출입지 해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내에 직속해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속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

- 만약, 신청서를 접수한 해관과 신청인의 소재지 해관이 동일한 직속세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직속해관에 제출
- 신청인 소재지의 직속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해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서를 발급
- 제출한 신청서가 실제 수출입과 무관하거나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음

나) 품목분류사전회시의 결정

해관은 사전회시 신청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중국 관세율표와 주 규정, 관련 행정규칙상에 명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서를 발급

- 그러나, 신청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전회시 신청서는 품목분류군에 따라 각각 지정된 광저우해관, 상하이해관, 천진해관, 대련해관에 직접 제출<sup>130)</sup>하며, 해당 사전회시 결정서는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음<sup>131)</sup>

129) 예를 들면, 수출입계약서 복사본, 사진, 설명서, 분석보고서, 평면도 등

130) 광저우해관: HS 1~24, 27~43, 50~71류,  
 상하이해관: HS 84~90,  
 천진해관: HS 47~29, 71~83,  
 대련해관: HS 25~26, 44~46, 91~97류

- 해관은 품목분류사전회시를 결정한 후 해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사전회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 결정서 역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에게 교부, 다른 1부는 품목분류 결정을 내린 해관이 보관
  - 결정서에는 신청인 정보, 신청일자, 신청물품 정보, 해관의 상품품목분류번호, 발급일자 및 세관날인이 포함됨

#### 다) 품목분류사전회시의 효력과 적용

- 해관이 내린 결정서는 당해 직속해관 관할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해관총서가 내린 품목분류사전회시<sup>132)</sup>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유효
  - 결정서는 해관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 결정서는 오직 신청인만이 사용 가능
  - 결정서를 소지한 신청인은 당해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서에 기재된 화물의 수출입 시 수출입지 해관에 제출해야 함
  - 해관은 검사 등의 방식으로 실제 수출입화물과 결정서에 서술된 내용 및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
- 결정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속해관이 변경통지서를 발급함
  - 원 결정서는 변경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 신청인은 원 결정서를 가지고 원 신청지 해관에서 결정서의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다음의 원인에 의해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는 경우 원 결정서는 즉시 실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1) U.S. Commercial Service, Advance Commodity Classification Ruling From China Customs, 2011. 1

132) 동일 물품에 대해 두 해관이 서로 다른 사전회시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건은 최종 결정을 위해 해관총서로 송부됨

- 신청인의 보충자료 또는 제출한 새로운 자료에 의해 해관이 재심사를 하여 원 결정서가 실효된 경우
- 국가정책의 조정, 법률 및 법규의 변화로 인하여 품목분류사전회시가 변경된 경우
- 결정서의 실효에 의해 발생한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와 기타 법규성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정내용은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상에 공개되고 조회됨<sup>133)</sup>
  - 신청인은 해관에 자신이 수출입하는 화물과 관련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를 신청할 수 있음
- 분류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sup>134)</sup>

### 3) 원산지 사전심사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당해 수입화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하여 해관의 사전확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sup>135)</sup>
  - 원산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기 전에 수입자나 물품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수입예정지역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 역시 확정됨

133)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7192>,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7193>

134) 『신홍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p. 50

135) 스위스, 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도 사전심사를 규정

- 신청인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관에 제출<sup>136)</sup>
  - 신청인의 기본정보, 신청목적, 신청대상 무역협정 명칭 등
  - 수입화물의 품명, 규격, 모델명, HS 코드 등 상세내역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품명, 규격, 모델, HS 코드, 가격, 원산지 등 정보
  - 수입물품 생산자 명, 가공지, 제조 및 가공절차 등
  -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 화물수입계약서, 의향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상업서류
  - 샘플, 제품설명서, 성분설명 등의 자료 및 기타 해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 이에 따라, 중국 해관은 수입자 및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 예정인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해관은 신청인이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후 5일 이내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sup>137)</sup>
  - 신청인은 10일 이내 서류보완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해당 신청이 취소됨
  - 해관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접수 불가사유를 설명
  
-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한 세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판정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함<sup>138)</sup>
  - 사전심사 결정서는 총 2부로 신청인과 해관에서 각 1부씩 보유

136)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37)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3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2조, 제15조

- 신청인은 원산지 사전심사 기간 중 서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sup>139)</sup>
-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결정서 내용에서 지정한 동일 수입 물품에 적용됨<sup>140)</sup>
  - 원산지 사전판정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전판정 대상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세관 검사단계에서 수입물품이 사전판정 결정서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고 원산지를 확인한 기준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해관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재결정하지 않음
  - 해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서류검사를 진행
  - 실제 수입된 물품이 사전심사 결정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재판정함
- 또한,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이나 그 포장상에 표기된 원산지는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함<sup>141)</sup>
- 다음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이 상실됨<sup>142)</sup>
  -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관련된 조건 및 법률 조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사법절차를 통한 심사결과 해당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해관의 결정을 부인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내용 불충분으로 인해 해관에서 발급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사실적 근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139)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4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3조, 제15조

14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6조

142)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 다. 사전심사 절차

### 1)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

- 수입자 및 수출자 등 사전심사 신청인은 물품의 통관 예정지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은 예정된 수출 또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물품명세, 제조공정자료, 기능 및 용도, 수입 및 수출예정일 등의 사항이 신청서에 포함됨
  - 필요한 경우 물품의 브로셔, 사진 및 샘플 등 기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의 경우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서 작성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에 영업 기밀사항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음<sup>143)</sup>

### 2) 사전심사 결정(답변)

- 해관의 사전심사는 과세가격의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서가 발급되며, 품목분류의 경우 정확한 회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대상 항목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짐
  - 보통 품목분류가 명확한 경우 15일 이내, 불명확하여 상세검토가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소요됨
  
- 해관이 내린 사전심사 결정서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의 경우 1년, 원산지의 경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결정서는 오직 신청인만이 동일 물품의 수출입시 적용 가능

---

143) APEC/ABAC,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Handbook*, 2005

3)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신청인은 사전심사 기간 중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관은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통지서를 발급

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60일 이내 관할 해관 및 해관총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개요

- 발리패키지의 채택으로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관세평가, 관세면제, 쿼터 등의 여타 범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이행하도록 합의하였음
  
-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화되어 있고, 대부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EU의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이외에도 환급, 수입절차, 운송수단, 지적재산권, 수입 규제품목 등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다가 점차 FTA 체결의 확대에 따른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조사대상 국가의 사전심사제도는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의 큰 틀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처리기간, 유효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 모두 근거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심사

결정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수정·취소절차, 재심사 신청절차, 사전심사 결정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수출입물품 또는 수출입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국가도 있음. 처리기간, 유효기간 및 재심사 신청기한 등은 국가별로 약간씩 기간의 차이가 있음

- 아래에서는 근거법령, 소관부서 등의 제도의 일반적인 부분과 처리기간 등 신청절차, 유효기간, 재심사신청 등의 결정 및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봄

#### 나. 제도 일반

- 조사 대상국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각국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를 두고 사전심사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미국은 사전심사 요청 사안 및 전자신청 여부에 따라 본청 소속의 OR&R과 NCSD로 나누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의 경우 사전심사는 수출입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세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사전심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사전심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의 특별법인 FTA 관세특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EU와 영국은 관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그 하위 법률 등에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법령에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지침에 의해 운

영되고 있음. 다만, FTA 원산지사전심사는 FTA 협정문에 따라 운영됨

- 사전심사의 신청 사안과 관련, EU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를 공통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TA 협정문 및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금지, 수입제한품목, 환급, 쿼터, 지적재산권 등의 요건확인 사항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함
  - EU와 영국에서는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IV-1〉 사전심사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담당 기관	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 Rulings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ACBPS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재무성 관세국 (Japan Customs)	G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근거 법령	- 관세법 제37조, 제86~87조, - 관세법 시행령 236조의2, - FTA관세특례법 제14조	- 19 USC Part 1625 - 19 CFR Part 177, 181	없음 (지침에 의해 운영)	- 관세법 제7조 3 항, 제89조, 제90 조	관세법 Section 43.1, 60 - Memorandum D 11-11-1, D 11-11-3, D11-4-16	- (EEC) 2913/92 제217조 - (EEC) 2913/92 제12조(품목분류, 원산지) - (EEC) 2454/93 제2조(품목분류) 제5-14조 (원산지)	- 관세법 43조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사전회시 잠정시행방법,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가격 사전심사 임시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사전 심사 요청 사항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관세감면 등	품목분류,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 과세가격, 환급, 수입절차, FTA, 운송수단, 지적재산권 등	과세가격, 품목분류, 특히 원산지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타법령의 요건	품목분류, 원산지 및 원산지 표기, 과세가격, 수입규제품목, 수입금지품목 등	품목분류, 원산지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 다. 신청절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심사의 대상화물은 수입예정물품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영국의 경우 수출물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영국과 중국은 수출화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수출화물도 원산지 사전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전심사는 기본적으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 수출자 등 직접 관련 당사자 및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의 경우 대부분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조건으로 하며 특히,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기업분류기준 A류 및 AA류의 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사전심사 처리수수료는 비교대상 국가 모두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검사, 분석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및 샘플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FTA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15일부터 150일까지 조사대상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과세가격과 명확한 대상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가장 짧으며, EU와 중국의 원산지 사전심사는 150일로 가장 긴 처리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호주와 캐나다가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처리기간을 각각 30일과 120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은 사안별로 각기 다른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

〈표 IV-2〉 사전심사 신청절차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b>사전심사 대상 화물</b>							
과세가격	수입물품	수입물품	수입예정물품만	수입물품	수입물품	-	수입물품
품목분류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수출입예정물품	수출입물품
원산지	수입물품						수입물품
<b>사전심사 신청인</b>							
과세가격	납세신고자	수입자, 수출자, 직접 관련 당사자 권한있는 대리인	수출입자	수입자 및 관련당사자	수입자, 국외 수출자 및 생산자, 통관대리인	-	기업분류기준 A류 및 AA류 수입업체
품목분류	수출입자		수입자			수출입자	해관에 등록된 수출업체, 대리인
원산지	-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	-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수입자나 수입과 직접관련자
<b>사전심사 수수료</b>							
과세가격	- 일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품목분류	(분석수수료 3만원)		단,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발생		단,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발생		
원산지	- FTA: 품목당 3만원						
<b>처리 기간</b>							
과세가격	1개월	90일		90일		-	15일
품목분류	- 일반: 30일(예외 15일)	30일	30일			3개월	- 명확한 경우: 15일 - 불명확한 경우: 2~3개월
원산지	- 사전확인: 60일 - FTA사전심사: 90일	30일 (단, OR&R에 신청시 90일)		30일	120일	45일(최대 150일)	150일

## 라. 결정 및 효력

-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나머지 비교 대상 국가들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등 심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서로 달리 정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비특혜원산지 등 일부 사전심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나머지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호주에서는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5년간, 일본 및 영국을 포함한 EU는 3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의 경우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원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3년을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정서와 동일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동일 물품을 수입하거나 사전심사 결정 당사자가 수입하는 유사 물품이라 하더라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하되,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미국 역시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물품의 수입시 반영되므로 수입신고시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해당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 일본과 EU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 결정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입된 경우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됨
    - 다만, 호주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동일 조건의 다른 당사자도 적용이 가능함
  - 캐나다는 결정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동일 물품을 신청인(수입자)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수출자 또는 생산자)으로부터 수입된 경우 송장 및 세관신고양식에 사전

심사 결정번호를 기재하여 심사 결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내용과 정황이 동일한 물품의 수입시 다른 수입자에게 발급된 사전심사 결정번호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세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임

- 중국의 사전심사 결정은 오직 당해 결정의 신청인만 적용 가능하며, 결정을 내린 세관을 구속하여 당해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함
  - 다만, 해관총서가 내린 심사 결정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유효함
  - 수입신고시 비고란에 사전심사 결정서 번호를 기재하고 결정서 사본과 기타 자료 첨부하여 제출

□ 조사 대상국가 모두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국, 호주, EU 및 영국은 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일본과 중국은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만이 90일 이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90일 이내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음

〈표 IV-3〉 사전심사 결정 및 효력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b>사전심사 결정의 유효기간</b>							
과세가격	없음 (예외적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공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1년)	변경·철회되지 않는 한 유효	5년 (변경 유예: 28일)	3년	수경·철회하거나 재심사 신청하지 않는 한 유효 - 심사 특성상 제한된 유효기간 가질 수 있음 - 비특혜 원산지: 3년	-	1년
품목분류		3년 (NAFTA의 경우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3년 (변경 유예: 6개월)	
원산지							3년
<b>사전심사 결정의 적용대상</b>							
과세가격	신청당사자, 동일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동일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동일한 수입물품	동일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신청인(수입자)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수출자)의 로부터 수입하는 동일 물품 (다만, 정황이 동일한 물품 인용 가능)	-	신청당사자, 동일 물품
품목분류	동일한 수출입물품 (동일 조건의 다른 당사자도 가능)	동일한 수입물품	동일 수입물품 (동일 조건의 다른 당사자도 가능)			동일한 수입 물품	
원산지	동일한 수입물품	동일한 수입물품					
<b>재심사 신청</b>							
과세가격	규정 미비	30일 이내	30일 이내	2개월 이내	90일 이내	-	60일 이내
품목분류						30일 이내	
원산지	30일 이내						

## 2.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대부분 APEC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과 주요국과 유사하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신고할 수 없다는 것과 과세가격,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점은 주요국들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으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문제는 제도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것과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가. 사전심사 결정의 수입신고

- 현재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에는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신고하고 있지 않아 수입자의 불편과 행정청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사전심사 절차로 인한 서류제출 등의 비용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행정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 내역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행정청 또한 수입신고를 심사하면서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행한 서류제출 요구와 확인 등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통관 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대상물품 여부를 과세당국에 통지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EU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EU의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지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EU 공동관세법에 두고 있음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통관대상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사전심사신청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사전심사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는 수입신고양식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품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수입신고서 항목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과세가격 확정에 따른 행정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관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수입물품이 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인 경우 사전에 수입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마련

- 우리나라에서는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사전심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FTA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제도가 없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행정심판원이나 소관부서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영국과 호주에서는 행정청 담당 소관부서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중국 또한 관할 해관 및 해관총서에, 일본에서도 당해 소관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당해 행정청 및 무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또한 우리나라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즉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재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재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입증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과 시간 및 관세환급, 추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관세청, 『관세연감』, 2013
- \_\_\_\_\_,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 \_\_\_\_\_,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2013. 10
- 관세청 북경관세관, 「중국의 수출입 · 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 서진교 · 서정민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3 No.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 오현길, 「아시아경제」, 「정부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 협정 즉시 이행」, 2014. 5. 29.
-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정보』, 2013. 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 2013.11
- \_\_\_\_\_,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중국』, 2013.12
-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
-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 APEC,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2009. 12.
-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 Evdokia Moï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 WCO,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6.

-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1.
-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 WCO Origin Conference 2014, Advance Ruling on Origin(Japan’s experience), 2014. 1.
-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2009. 12.
- CBSA, Revenue and Trade Management Program(Trade Compliance), 2013. 4.
- PWC, China Customs to issue Advanced Valuation Rulings, 2011.
- U.S. Commercial Service, Advance Commodity Classification Ruling From China Customs, 2011. 1.
- APEC/ABAC,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Handbook, 2005.
-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관세평가분류원,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vnci>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영국 관세청, <http://www.hmrc.gov.uk>

일본 관세청, <http://www.customs.go.jp>

중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v.cn>

캐나다 관세청, <http://www.cbsa-asfc.gc.ca>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http://tradenavi.or.kr/>

호주 관세청, <http://www.customs.gov.au>

KOTRA 국가정보, <http://www.globalwindow.org>

OECD, <http://www.oecd.org/>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



## [부도 2]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일반용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일반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⑧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⑨ 유효 기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부도 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을지)

## 물 품 설 명 서

###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 2. 구조 및 형태

-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

(흐름도)

- ☞ 사진(Image), 재질 등

### 3. 기능 및 용도

-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 5. 제출서류 목록

-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부도 5] 품목분류사전심사서



관 세 평 가 분 류 원



수신자  
(경유)

제목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보고·통보)**

---

OOO가 20   년   월   일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품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보고·통보)합니다.

아           래

1. 신청 사항

- 신청인 성명 :
- 신청인 상호 :
- 신청인 주소 :
- 수출입자 상호 :
- 통관예정지 세관 :

2. 물품 설명

- 품명·규격
- 물품 설명

3. 결정 내용

- 품목번호
- 분류 이유

※ 유의사항

1. 상기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 통과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



## [부도 7] 원산지사전확인서

승인번호			
<b>사 전 확 인 서</b>			
신청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결정내용 및 이유			
<p>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세 청 장                    (인)</p>			
<p>※ 유의사항</p> <p>수입신고서 이 심사서의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 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p>			

## [부도 8]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신청서(국문)

				처리기간 90일
<b>사전심사 신청서</b>				
1.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물품				
품 명	HS번호(6단위)	조정 가격 (\$)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부도 9]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신청서(영문)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2.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3. Exporter(or Producer) (full name, address, country) (if known)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S\$)	Description of the good	
			<i>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i>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terial list	HS No (6 digit)	Price(US\$)	Origin(Basis of determination)	Production Process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put type="checkbox"/>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put type="checkbox"/>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input type="checkbox"/>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put type="checkbox"/>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input type="checkbox"/>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⑦ Others <input type="checkbox"/>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input type="checkbox"/>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input type="checkbox"/>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input type="checkbox"/>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_____ Date of Issue 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 [부도 10]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국문)

승인번호			
<b>사 전 심 사 서</b>			
신청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결정내용 및 이유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관 세 청 장                    (인)</p>			
<p>※ 유의사항</p> <p>수입신고서 이 심사서의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 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p>			


## [부도 11]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영문)

Approval No.			
<b>Advance Ruling</b>			
Applicant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Import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Exporter (or Produc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Content			
Goods	Name	HS No.(6digit)	Description of Goods
Decision and Basis			
<p>I notify you of the advance ruling of the origin pursuant to Article          〇.〇 of the Korea-〇〇〇 FTA</p> <p style="text-align: center;">Date(yy/mm/dd)</p> <p style="text-align: center;">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signature)</p>			
<p>※ Remark</p> <p style="text-align: center;"><u><i>This advance ruling is applied to the identical goods in name and          description with advance ruling.</i></u></p>			


[부도 12] 호주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서 양식

 <b>Australian Government</b> <b>Australian Customs Service</b>		<b>Application for a Valuation Advice</b>	
<p>The Privacy ACT 1988 requires us to tell you why we are collecting this information, how we will use it and whether we will disclose i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consider and to respond to your request for a valuation advice. Customs is not permitted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except when required or authorised to do so by law.</p>			
		 If this form was completed by a business with fewer than 20 employees, please provide an estimate of the time taken to complete this form.	
		<input type="checkbox"/> Hours	<input type="checkbox"/> Minutes
<b>Advice to be returned to: Applicant</b>			
Applicant/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Fax No.:	Email Address:	
Contact:	AREF:		
<b>Customs</b>			
1. Advised Issue:		2. Advice Number:	3. Increase in Value: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4. Source:		5. Lodgement Date: / /	
<b>Applicant to complete</b>			
6. Claimed Issue (see reverse):			
7. Description of goods (The goods are identified as):			
8. Reason/s for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is lodged because):			
9. Overseas Agent:		10. Country:	11. Previous Advice for these good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No:
12. Importer: (Either ABN/CAC or CCID must be entered): ABN/CAC:                      CCID:		Name:	
13. Supplier: CCID:		Name:	
14. Applicant: (Either ABN/CAC or CCID must be entered) ABN/CAC:                      CCID:		Name:	
Signature of Applicant:		Date: / /	15. Nox No.: (Broker only)
<b>Customs Use Only</b>			
16. Result:			
File No.:	Decision Officer Signature:	Date: / /	Name:                      Telephone:
17. Advice:			Date:
Withdrawn			/ /
Rejected	Why? .....		/ /
Finalised			/ /
Void	Why? .....		/ /
B174 (JUL 2005)			

## [부도 13] 호주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

 <b>Australian Government</b> <b>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b>		<b>Application for a Tariff Advice</b>
<p>The Privacy ACT 1988 requires us to tell you why we are collecting this information, how we will use it and whether we will disclose i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consider and to respond to your request for a tariff advice. Customs is not permitted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except when required or authorised to do so by law.</p>		
<b>Applicant</b>		
1. Applicant Company Name:		
2. Applicant ABN or CCID:	ABN/CAC:	CCID:
3. Address:		
4. Telephone No:	5. Fax no:	6. Email Address
7. Applicant Contact Name:		8. Your Reference
<b>Importer</b>		
9. Importer/Company Name:		
10. Importer ABN or CCID:	ABN/CAC:	CCID:
<b>Supplier</b>		
11. Supplier/Company Name:		
12. Supplier CCID:		
<b>Goods (If space is insufficient, please attach pages)</b>		
13. Full Description of goods:		
14. Composition of goods:		
15. The use/s for which the goods are designed:		
16. The form in which the goods will be imported:		
17. Previous advice given? Y / N If yes, Advice Number:	18. IDM with form? Y / N (IDM is essential, see Note 14 on completing the form)	19. Sample with form? Y / N
<b>Applicant's Opinion (If space is insufficient, please attach pages)</b>		
20. Claimed Heading:		21. TCO Claimed (if any):
22. Reason for claimed heading/TCO:		
<b>Applicant's Signature</b>		
23. Signed:		24. Date:
<b>Customs Use Only</b>		
Lodgement Date:	Advice Number:	Lodging Officer:
<p>Mail or deliver the completed form to the Customs office in your capital city. Applications should be addressed to the Tariff Section. Current address details can be found on the Customs web site - <a href="http://www.customs.gov.au">www.customs.gov.au</a></p>		

## [부도 14] 호주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

		<b>Australian Government</b> <b>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b>	<small>The Privacy Act 1988 requires us to tell you why we are collecting this information, how we will use it and whether we will disclose it.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ill use this information to determine whether your goods satisfy the relevant rules of origi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not permitted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except when required or authorised to do so by law.</small>
<b>APPLICATION FOR ORIGIN ADVICE RULING</b>			
<b>A. Applicant Details</b>			
Applicant Company Name: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Address:			
Contact Name: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b>B. Broker Details (if applicable)</b>			
Broker Company Name:		ABN:	
Address:			
Broker Name: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b>C. Supplier Details</b>			
Supplier Name:		Supplier's Customs Client ID Number (CCID):	
Address:			
<b>D. Indicate the trade agreement or scheme under which you are seeking advice:</b> <i>(Note: each application must be for a single origin matter)</i>			
<b>E. Have you attached all relevant documentation to this application?</b>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small>Note: It is essential that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request for advice be supplied with this application. You should read the "Origin Advice Rulings" section in the relevant instructions and guidelines associated with the Rules of Origin Practice Statement (PS 2009/13), for full details of information required to be provided.</small>			
<small>B659 (JULY 2009)</small>			

[부도 15] 호주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F. Have you obtained any previous advice for these goods from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Yes  No

If yes, please select advice type and provide the relevant advice number/s:

Tariff Advice  Origin Advice  Origin Advice

Advice Number/s: \_\_\_\_\_

---

**G. Goods Details (if more space is required please attach additional page/s with reference to this section)**

Detailed description of goods: \_\_\_\_\_

Tariff Classification: \_\_\_\_\_

Indicate the rule of origin for which you are seeking advice: \_\_\_\_\_

Detailed descrip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of goods (if applicable): \_\_\_\_\_

---

**H. Materials - describe ALL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se goods (if more space is required please attach additional page/s with reference to this Section)**

Description of Materials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

**I. Name and Signature of Applicant/Broker**

Full Name: \_\_\_\_\_

Signature: \_\_\_\_\_ Date: / /

Page 2 of 2

[부도 16] 일본 사전교시 신청서 C-1000호

受付番号 <small>(税関記入欄)</small>	登録番号 <small>(税関記入欄)</small>	
--------------------------------	--------------------------------	--

事前教示に関する照会書

税関様式C第1000号

平成 年 月 日	照会者の 住所、氏名・印 代理人の 殿 住所、氏名・印	輸入者符号	
下記貨物の <input type="checkbox"/> 関税率表適用上の所属区分 <input type="checkbox"/> 関税率 <input type="checkbox"/> 統計品目番号 <input type="checkbox"/> 内国消費税等の適用区分及び税率 <input type="checkbox"/> 他法令		製造地	製造者
品名、銘柄 及び型番		単価	輸入予 定官署
照会貨物	<input type="checkbox"/> 到着 <input type="checkbox"/> 未到着	参考資料(返却の要・否)	見本・写真・図画・カガク・説明書・分析成績・その他( )
輸入契約の時期、輸入の予定時期、 数量及び金額並びに特別注文、投 資又は長期契約の予定の有無		照会貨物に係る事前教示実績 (有・無) (事前教示番号) ( )	
		類似貨物に係る輸入実績 (有・無) (輸入申告番号) ( )	
照会貨物の説明 (製法、成分割合、性状、構造、機能、用途、包装等)			
関税率表適用上の所属区分等に関する意見 (□有 □無)			
非公開期間の要否 <small>(原則公開です、 裏面注意事項3参照)</small>	要・否	非公開理由	
非公開期間	( ) 日	(180日を超えない期間)	続 補足説明書 要求・提出、 枚

(注)裏面の確認書にも記入をお願いします。また、注意事項をよくお読みください。

(規格A4)

[부도 17] 일본 사전교시 신청서 C-1000호(한글번역본)

접수번호	등록번호	
------	------	--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

세관양식C제1000호

년 월 일	조회자 주소, 성명·인 대리인의 귀하 주소, 성명·인	수입자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하기물품의 <input type="checkbox"/> 관세율표적용상의 세 번 구분 <input type="checkbox"/> 관세율 <input type="checkbox"/> 통계품목번호 <input type="checkbox"/> 내국소비세 등의 적용구분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 에 대하여 조회합니다.			제조지 제조자
품명, 상표 및 모델번호		단가	수입예 정관서
조회 물품	<input type="checkbox"/> 도착 <input type="checkbox"/> 미도착	참고자료 (반환의 필요·불요)	견본·사전·도면·카탈로그·설명서·분석·성적기타(    )
수입계약시기, 수입예정 시기, 수량 및 금액과 특 별주문, 투자 또는 장기 계약 예정 유무			조회물품에 관련된 사전 교시 실적의 유무 및 유 사물품에 관련된 수입 실적 유무
조회물품의 설명(재명, 색상, 성분비율, 구조, 기능, 용도, 포장 등)			
관세율표적용상의 소속 구분 등에 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공개의 가부	가부	비공개 이유	
비공개 기간	(    )개월    무기한    기타(    )	붙임	보충설명서    요구·제출,    매

(주) 뒤쪽의 확인서에도 기입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십시오.

[부도 18] 일본 원산지사전교시 신청서 C-1000-2호

受付番号 (税関記入欄)	登録番号 (税関記入欄)
-----------------	-----------------

事前教示に関する照会書(原産地照会用) 税関様式C第1000号-2

平成 年 月 日	照会者の 住所、氏名・印	輸入者符号	
殿	代理人の 住所、氏名・印	(担当者)	(電話番号)
下記貨物の <input type="checkbox"/> WTO 協定 <input type="checkbox"/> 経済連携協定( ) <input type="checkbox"/> 特惠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 ) 税率適用に関する原産地について照会します。			
品名 銘柄 型番		製造地 製造者	輸入予 定官署
照会貨物	<input type="checkbox"/> 到着 <input type="checkbox"/> 未到着	参考資料(返却の要・否)	見本・写真・図画・ <i>カクカ</i> *・説明書・その他( )
輸入契約の時期、輸入の予定時期、 数量及び金額並びに特別注文、投資又 は長期契約の予定の有無			照会貨物に係る事前教示実績(有・無) (事前教示番号 )
			類似貨物に係る輸入実績(有・無) (輸入申告番号 )
照会貨物の説明(関係する国における加工、製造に関する事項等)			
原産地認定に関する意見 (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無 )			
非公開期間の要否 (原則公開です。 裏面注意事項3.参照)	要・否	非公開理由	
非公開期間	( )日 (180日を超えない期間)	続	補足説明書 要求 ・ 提出、 枚

(注)裏面の確認書にも記入をお願いします。また注意事項をよくお読みください。

(規格 A4)

## [부도 19] 일본 과세가격사전교시 신청서 C-1000-6호

税関様式C第1000号—6

受理年月日		登録番号	
受理印 事前教示に関する照会書（関税評価照会用）			
平成 年 月 日	照会者の住所、氏名・印（署名） （輸入者符号）	(電話番号)	
	代理人の住所、氏名・印（署名）		
税関長殿	(電話番号)		
下記の輸入貨物の課税価格に係る関税評価に関する法令の解釈・適用その他関税評価上の取扱い等について、以下の「関税評価に関する照会者の見解」のとおりで差し支えないかどうか文書による回答を受けたいので照会します。 なお、この事前教示に関して、添付した資料のほかに、審査のために必要な資料や、日本語以外の言語で記述されている資料について日本語翻訳文の提出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その提出に応じます。 また、照会者は、他の納税者に対しても関税評価に係る法令の解釈等について予測可能性を与えるため、照会内容及び回答内容が一般に公開されること、公開に関して取引等の関係者の了解を得ること、並びに仮に関係者間で紛争が起こった場合には自己の責任において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輸入貨物の品名		輸入通関 予定官署	輸入予定 時期
照会の趣旨			
取引の概要及び関税評価に関する照会者の見解とその理由	別紙1のとおり		
非公開期間の要否 (原則公開です。 下記注意事項5参照)	要・否	非公開期間	( )日 (180日を超えない期間)
非公開理由			
添付資料	事前照会に係る取引等の事実関係を証明できる関係書類		

## (注意事項)

- この照会書は、1部提出してください。「取引の概要及び関税評価に関する照会者の見解とその理由」欄については、可能な限り詳細に記載してください。
- 照会の内容等によっては、資料を提出していただいても文書回答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 照会に対する回答がないこと等を理由に申告期限や納期限が延長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 提出された資料につきましては返却いたし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 事前教示照会に対する回答として税関より発給される事前教示回答書(変更通知書兼用)(関税評価回答用)は、関税評価の参考とするため回答後原則として公開し、納税者一般の閲覧に供します。ただし、取引を実際に行う前に他者に知られることにより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場合等、回答後一定期間当該内容を非公開と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180日を超えない期間内で非公開期間の指定ができますので、事前教示照会書中の「非公開期間の要否」欄中「要」に○をつけ、「非公開理由」欄にその理由を記載したうえ、「非公開期間」欄に具体的な非公開期間を指定してください。その際、税関より、非公開期間設定の必要性について説明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  
また、非公開期間が経過した後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に定める不表示情報に該当すると考えられる部分や守秘義務に抵触すると考えられる部分については、当該部分を伏せて公開することとなります。その際、税関より、非公開の必要性について説明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

(規格A4)



[부도 21] EU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

Annex II  
"Annex 1B

EUROPEAN COMMUNITY		APPLICATION FOR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b>1. Applicant (full name and address)</b> <input type="checkbox"/>  Telephone Number : Fax Number : Customs ID :		<b>For Official use</b> Registration Number : Place of Receipt : Date of Receipt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TI Application Language :  Images to be scanned : Yes <input type="checkbox"/> # ... No <input type="checkbox"/> Date of Issue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ssuing Officer : All Samples returned : <input type="checkbox"/>	
<b>2. Holder (full name and address)</b> (Confidential)  Telephone Number : Fax Number : Customs ID :		<b>Important note</b> By signing the declaration, the applicant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given on this form and on any continuation sheet(s) lodged with it. The applicant accepts that this information and any photograph(s), sketch(es), brochure(s) etc. can be stored on a datab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at the data, including any photograph(s), sketch(es), brochure(s) etc.,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or obtained (or obtainable) by the administration, and which have not been marked in boxes 2 and 9 of the application as being confidential can be disclosed to the public via the Internet.	
<b>3. Agent or Representative (full name and address)</b>  Telephone Number : Fax Number : Customs ID :		<b>4. Reissue of a BTI</b> If you are applying for the reissue of a BTI, please complete this box. BTI Reference Number : Valid from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menclature Code : .....	
<b>5. Customs Nomenclature</b> Please indicate in which nomenclature the goods are to be classified : <input type="checkbox"/> Harmonized System (HS) <input type="checkbox"/> Combined Nomenclature (CN) <input type="checkbox"/> TARIC <input type="checkbox"/> Refund nomenclature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 : .....		<b>6. Type of Transaction</b> Does this application relate to an import or export actually envisaged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b>7. Classification Envisaged</b> Please indicate where, in your view, the goods are classified. Nomenclature Code : .....	
<b>8. Description of the Goods.</b> Include, where necessary, the precise composition of the good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he type of manufacturing process undergone, the value (including the components), the use of the goods, the usual trade name and, where appropriate, the packaging for retail sale in the case of sets of goods(Please use a separate sheet, if more space is required).			

[부도 22] EU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p>9. Commercial denomin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 <span style="float: right;">(Confidential)</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Please indicate which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box 10 of this application or obtained (or obtainable) by the administration is to be treated as confidential:</p>						
<p>10. Samples etc.</p> <p>Please indicate which, if any, of the following are enclosed with your application.</p> <p>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Brochures <input type="checkbox"/> Photographs <input type="checkbox"/> Samples <input type="checkbox"/> Other <input type="checkbox"/></p> <p>Do you wish your samples to be returne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Special costs incur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s a result of analysis, expert reports or the return of samples, may be charged to the applicant.</p>						
<p>11. Other BTI Applications* and other BTIs held*</p> <p>Please indicate if you have applied for, or been issued with, BTIs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at other Customs offices or in other Member States.</p> <p>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yes, please give details and enclose a photocopy of the BTI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d style="padding: 2px;">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                 Nomenclature Code :             </td> <td style="padding: 2px;">                 Nomenclature Code :             </td> </tr> </table>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menclature Code :	Nomenclature Code :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ountry of Application : Place of Application : Date of Application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menclature Code :	Nomenclature Code :					
<p>12. BTIs issued to other Holders*</p> <p>Please indicate if you are aware of BTIs for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already issued to other holders.</p> <p>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yes, please give details:</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2px;">                 Nomenclature Code :             </td> <td style="padding: 2px;">                 Nomenclature Code :             </td> </tr> </table>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menclature Code :	Nomenclature Code :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ssuing Country : BTI Reference : Date of Start of Validity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menclature Code :	Nomenclature Code :					
<p>13. Date and Signature</p> <p>Your reference :                  Date :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Signature :</p>						
<p><b>For Official Use</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width: 100%;"></div>						

\* Please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if more space is required.



## [부도 24] 영국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b>9. Commercial denomin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b>		(confidential)
<b>10. Country of origin</b>		
Country of origin: _____		Country of export (where different): _____
Country of import: _____		
<b>11. Origin Rule</b>		
<b>12. Ex-works price:</b>		(confidential)
<b>13. Samples etc</b>		
Please indicate which (if any) of the following are enclosed with your application.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Brochures <input type="checkbox"/> Photographs <input type="checkbox"/> Samples <input type="checkbox"/> Other <input type="checkbox"/>
Do you wish your samples to be returne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Special costs incur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s a result of analysis, expert reports or the return of samples may be charged to the applicant.		
<b>14. Other Applications for Binding Origin Information (BOI) or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b>		
Please indicate if you have applied for, or have been issued with, BOI or BTI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in the UK or in other Member State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yes, please give details:
<b>BOI</b>		<b>BTI</b>
Country of Application:	Country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OI Reference: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15. Declaration</b>		Your reference:
Signature: _____		
Name: _____	Date: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부도 25] 중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商品预归类申请表

( ) 关预归类申请 \_\_\_\_\_ 号

申请人： (申请企业名称，必填)	
企业代码： (10位企业代码，必填)	
通讯地址： (申请企业通讯地址，必填)	
联系电话： (申请企业联系电话，必填。如：(022)12345678)	
商品名称(中、英文)： (商品名称，必填) (英文名称，必填) (规格型号，必填)	
其他名称： (其他名称)	
商品描述(规格、型号、结构原理、性能指标、功能、用途、成份、加工方法、分析方法等)：  (商品描述，必填)	
进出口计划(进出口日期、口岸、数量等)：  (进出口计划，必填)	
随附资料清单(有关资料请附后)： (随附资料清单)	
此前如就相同商品持有海关商品预归类决定书的，请注明决定书编号：	
申请人(章)：  (申请人，必填)  (申请时间，必填。如：2007-04-20)	海关(章)：  签收人： 接受日期： _____ 年 月 日

- 注：1、填写此申请表前应阅读《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2、本申请表一式两份，申请人和海关各一份；  
3、本申请表加盖申请人和海关印章方为有效。

관세연구 14-03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

---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이상엽 · 김미영 · 이민선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8-9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